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2017. 12



제 출 문

강원도지사 귀하

귀 도와의 연구용역 계약에 따라 본 보고서를 “강원도문화재 연구소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이 사 장 조 형 준

연 구 위 원 강 병 항

책임연구원 곽 지 환

선임연구원 한 진 희

선임연구원 이 명 길

목 차

제 I 장 과업의 개요	3
①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 과업의 배경	3
2. 과업의 목적	4
② 과업의 범위 및 내용	4
1. 과업의 범위	4
2. 과업의 내용	5
③ 과업의 방법 및 절차	9
1. 과업의 추진방법	9
2. 과업의 수행절차	10
제 II 장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13
① 강원도 일반 현황	13
1. 기구·인력	13
2. 예산현황	13
3. 문화재 현황	14
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16
② 강원도 출연기관 현황	17
1. 출연기관 현황	17
2. 출연금 현황	19
3. 재정지원 현황	19
③ 관련법규 검토	21
1. 민법	21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21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4
4.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24
5. 관련법규 요약 및 시사점	26

제Ⅲ장 유사사례 및 주민설문 조사29

- ① 유사사례 조사29
 -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29
 - 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31
 -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33
 - 4. 신라문화유산연구원35
 - 5. 유사사례 조사의 시사점37
- ② 주민설문 조사37
 - 1. 조사개요37
 - 2. 조사결과39
 -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48

제Ⅳ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53

- ① 설립개요53
 - 1. 설립의 의의53
 - 2. 도 출연기관 설립의 장·단점54
 - 3. 설립근거 및 절차55
- ② 여건분석 측면57
 - 1. 경영환경 분석57
 - 2. 관련법규 검토58
 - 3. 검토 결과61
- ③ 사례 및 설문조사 측면62
 - 1. 사례조사62
 - 2. 설문조사63
 - 3. 검토 결과63
- ④ 주민복리 측면64
 - 1. 지역 문화재 활용과 주민복리64
 - 2. 지역 문화재 활용의 한계65
 - 3. 지역 문화재 활용을 위한 방안65
 - 4. 검토 결과66
- ⑤ 검토 의견67

제Ⅳ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53

- ① 설립개요53
 - 1. 설립의 의의53
 - 2. 도 출연기관 설립의 장·단점54
 - 3. 설립근거 및 절차55
- ② 여건분석 측면57
 - 1. 경영환경 분석57
 - 2. 관련법규 검토58
 - 3. 검토 결과61
- ③ 사례 및 설문조사 측면62
 - 1. 사례조사62
 - 2. 설문조사63
 - 3. 검토 결과63
- ④ 주민복지 측면64
 - 1. 지역 문화재 활용과 주민복지64
 - 2. 지역 문화재 활용의 한계65
 - 3. 지역 문화재 활용을 위한 방안65
 - 4. 검토 결과66
- ⑤ 검토 의견67

제Ⅴ장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토71

- ① 비전 및 미션의 정립71
 - 1. 미션과 비전71
 - 2. SWOT 분석 및 전략 방향·과제 도출71
- ② 위상과 역할72
 - 1. 위상72
 - 2. 역할73
- ③ 운영계획74
 - 1. 운영 목표74
 - 2. 주요 사업구성76
 - 3. 핵심사업 추진 계획79

- ④ 조직 및 인력 구성88
 - 1. 조직구성88
 - 2. 인력구성95
- ⑤ 자원조달방안97
 - 1. 필요 재원의 추정97
 - 2. 자원조달계획97
- ⑥ 설립 타당성 분석100
 - 1. 비용·편익 분석100
 - 2. 설립 대안별 비교107
- ⑦ 설립에 따른 영향 분석109
 - 1. 지역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109
 - 2. 강원도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111
 - 3.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112
 - 4. 관련기관과의 유사중복 여부113
 - 5. 공무원 감축 효과113

제Ⅵ장 종합결론117

- ① 종합의견117
 - 1. 독립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117
 - 2. 독립 출연기관 설립의 적정성120
 - 3. 문화재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121
 - 4. 독립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123
- ②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124
- ③ 정책제언124

[별첨] 주민 설문조사지127

표 목 차

[표 2-1] 강원도 문화재 관련 사업예산	13
[표 2-2] 강원도 문화재 현황	14
[표 2-3]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14
[표 2-4] 강원도지정문화재 현황	14
[표 2-5] 시·군별 문화재 분포 현황	15
[표 2-6] 전국 문화재 분포 현황	16
[표 2-7] 도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17
[표 2-8] 강원도 출연기관 현황	18
[표 2-9] 연도별 출연금 현황	19
[표 2-10] 재원지원 현황	20
[표 2-11] 민법의 주요내용	21
[표 2-12] 지방출자·출연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22
[표 2-13] 매장문화재법 주요내용	24
[표 3-1] 주민설문 조사 내용	38
[표 3-2] 주민설문 조사 설계	39
[표 4-1] 출연기관 설립절차	56
[표 4-2]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 제3항 관련)	59
[표 5-1]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80
[표 5-2] 박물관 소장문화유산 및 보존환경 관리사업 추진일정	85
[표 5-3] 단기 조직의 팀별 업무분장 내역	92
[표 5-4] 중기 조직의 팀별 업무분장 내역	94
[표 5-5] 현 재단 부설 연구소의 정원 및 현원	96
[표 5-6]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단기 정원 조정(안)	96
[표 5-7]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중기 정원 조정(안)	96
[표 5-8] 도의 재정지원 방안(안)	98
[표 5-9] 현 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사무공간	99
[표 5-10] 설립타당성 분석기법의 비교	103

[표 5-11] 최근 5년간 수입 지출 현황	103
[표 5-12] 편익의 추정	103
[표 5-13] 최근 5년간 지출 예산 현황	104
[표 5-14] 사업비의 추정	104
[표 5-15] 연도별 직급별 연봉	105
[표 5-16] 연도별 인건비 추정	105
[표 5-17] 기본경비의 추정	106
[표 5-18]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비용 추정 결과	106
[표 5-19] 비용-편익 분석 결과	107
[표 5-20]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1
[표 6-1] 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 추이	121
[표 6-2] 강원도 문화재 수 변동 추이	122
[표 6-3]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역할	122

그림 목 차

[그림 1-1] 과업의 수행절차	10
[그림 3-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직도	30
[그림 3-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직도	32
[그림 3-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조직도	34
[그림 3-4]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직도	36
[그림 3-5] 응답자의 성별 분포	39
[그림 3-6] 응답자의 연령 분포	40
[그림 3-7] 응답자의 결혼 유무	40
[그림 3-8] 응답자의 직업 분포	41
[그림 3-9]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	41
[그림 3-10]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42
[그림 3-11]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만족도	43
[그림 3-1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	43
[그림 3-13]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44
[그림 3-14] 독립적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	45
[그림 3-15] 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찬반 여부	45
[그림 3-16]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	46
[그림 3-17]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47
[그림 3-18] 출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	47
[그림 3-19] 출연기관의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48
[그림 5-1]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비전 체계도	72
[그림 5-2] 현 재단 부설 연구소의 조직도	90
[그림 5-3]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단기 조직구성(안)	91
[그림 5-4]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중기 조직구성(안)	93
[그림 5-5]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112
[그림 6-1]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 찬반 의견	118
[그림 6-2]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	124

제 1 장

과업의 개요

-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3 과업의 방법 및 절차

제 I 장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

- 강원문화재단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하여 부설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소의 기능 확대
 - 전국단위 문화재 발굴조사 수주를 통한 재정적 안정성 확보
 - 강원도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강화
-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
 - 기존 관 중심행정체제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한 공공목적 달성
 - 강원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
- 문화재 관련 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 전문 인력을 활용한 각종 체험교실 및 시민강좌, 현장답사 실시로 지역주민의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강원도민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교육 및 각종 콘텐츠 개발로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콘텐츠 소비와 연결된 기념품, 숙박, 요식업 등 지역 내 소비지출의 증대 효과
- 경제적 효과
 - 안정적 수입구조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인력 진입

- 도내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사회교육활동을 통한 문화재 관리 전문 인력 양성

2. 과업의 목적

- 현 강원문화재연구소는 강원문화재단의 부설연구소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제한으로 인한 전국 단위의 문화재 발굴 참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발주하는 학술용역에 참여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강원도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단위의 문화재 조사 수주 및 수익성을 강화하여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강원도 출연 독립법인으로 대외적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강원도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권에 기여하고, 도비 및 국비가 투입되는 문화유산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과업은 강원문화재연구소 기능의 활성화 및 장기 발전 방안을 강구하고, 학술 용역 위주의 문화재 조사 기능과 함께 문화재 관리, 전시, 교육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도 출연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하여 공공 연구기관으로의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원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함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과업의 범위

1.1 공간적 범위

- 강원도 전역(18개 시·군)

1.2 시간적 범위

- 운영실적 검토 : 과거 3년간
- 분석 기준연도 : 2017년 기준, 2018년~2027년(향후 10년)

1.3 내용적 범위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사업 추진계획
- 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민복리 증진 방안 도출
-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상
- 타 기관의 운영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 여부 및 재원확보계획
- 독립법인 설립에 따른 지방 재정애 미치는 영향 분석

2. 과업의 내용

2.1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운영 관련 검토

- 추진 배경, 추진경과, 설립의 필요성, 설립 기본구상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의 타당성 검토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주요 사업 내용 추진 전략 검토
 - 주요사업 구상과 검토, 사업별 효과성 비교·분석, 비교·분석을 통한 추진전략 도출
- 타 시도 출연기관 문화재연구소의 운영 사례와 시사점 도출
- 5년 이상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
- 효과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2.2 사업의 적정성 분석

- 강원문화재단(출연기관)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문화재 조사 출연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적정한지 비교 검토
-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거나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어 법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
-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절성
 - 법인 신설 이외의 다른 대안*(2가지 이상)과 비교하여 법인 신설이 필수적인지 검증하되 반드시 객관적인 근거 제시
 - *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위탁, 기존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 활용 등
- 문화 관련 유사법인의 별도 설립 필요성 검토

2.3 경제성 분석

- 현행 강원문화재단의 부속기관 형태와 독립기관으로 별도 운영에 따른 운영비 검토
-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한 경제성 검토
- 비용·편익 분석기법(B/C분석)을 통해 개별 사업별로 분석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익·비용비(B/C ratio)를 도출
 - * 조건부가치평가법 등 설문조사에 기반한 주관적 분석을 지양하고 비용과 편익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
 - 편익(비용)에는 명시적 편익(비용) 뿐만 아니라 암묵적 편익(비용)도 포함하여 기관의 수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혜택과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석
 -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실시하되 현재가치를 도출하기 위한 할인율은 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 활용

2.4 사업의 효과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객관적이고 계량화된 지표분석이 어려우므로 신뢰성 있는 외부 여론조사 기관의 주민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시 반드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설문 구성
 - 주민 설문조사결과와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역상공인, 전문가 집단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를 위하여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등 분석
 - 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최종수요는 예상되는 실제 지출을 의미하므로 가상의 편익을 최종수요로 보지 않도록 주의
 - 한국은행의 전국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산업부문별 총생산액 및 투입구조 등 분석

2.5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5년간)

- (수지분석) 설립 기관의 5년간 사업수지를 분석하되 사업 미실시, 지자체 직접 수행, 민간 위탁 등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사업별 수지분석을 토대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다른 대안들의 경우와 비교
 - (수입) 예상되는 배당 수입,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생략 가능
 - (지출) 출자·출연 및 보조금 지급 계획, 사업비 지출 계획을 활용

- (가용투자재원 분석) 지자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가용투자 재원 및 향후 5개년 동안의 추세 분석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에서 출연금 또는 출자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검토

2.6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출자·출연기관 또는 공기업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조정 방안 검토

2.7 조직 및 인력 수요분석

-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사업기능 중심의 조직구성 및 적정 인력 검토
- 조직 분석
 - 타 기관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립예정 기관이 수행할 사업기능을 중심으로 최적의 업무분장 도출
 - 업무분장을 토대로 적정조직(안) 도출 및 대안별 비교·평가를 통한 최적이 선정(인사·조직 지침 상의 인력·조직 운영기준 준수)
- 인력 분석
 - 선정된 조직 안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분석하되 직급별, 분야별로 구분
- 직급별 인건비 분석
 - 직급별 인건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적정 인건비 지급 수준 결정 및 경상경비를 추정

2.8 적정 자본 구조 및 사업 수지 분석

-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출연할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 법」에 따라 용도폐지 가능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
- 수익·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재산, 조성목적에 따라 계속하여 사용기간 중에 있는 재산 등이 현물출자·출연 되지 않도록 주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행정재산은 출자·출연 배제
- 차입금 상환계획의 적정성
 - 차입이 필요한 경우 차입 금리와 경제 전망을 바탕으로 차입금 상환계획이 합리적인지 분석

③ 과업의 방법 및 절차

1. 과업의 추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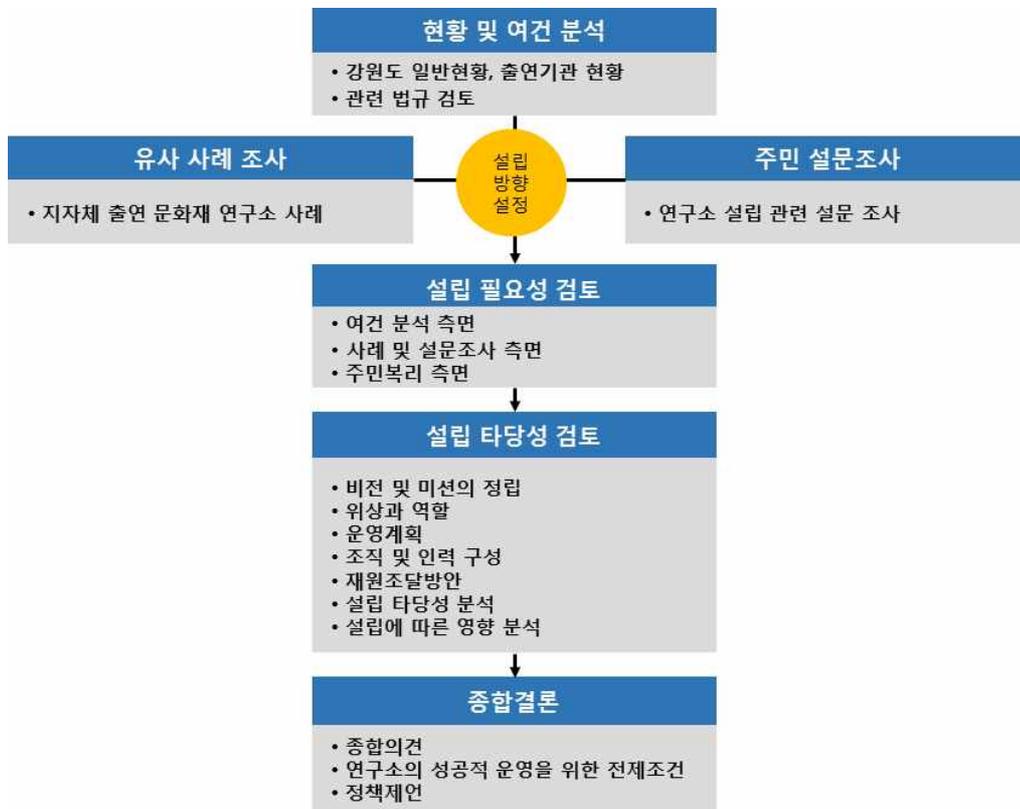
- 본 과업의 추진방법은 관련문헌, 현황자료 분석, 운영 실태조사, 유사 사례조사, 관련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내용을 근거로 크게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황조사 및 분석으로 강원도의 일반현황, 문화재 관련 세부사업 계획, 상위계획 및 관련법규 검토 등을 통해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함.
- 둘째, 유사사례 및 주민의견 조사로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하는 데 필요한 벤치마킹 및 당위성을 확보함.
- 셋째,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계획으로 여건분석 및 유사사례와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립의 필요성, 설립방향, 조직, 인력 및 자본금 규모, 운영방식 검토 등 합리적인 설립계획을 수립함.
- 넷째, 사업추진계획 및 타당성 분석으로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타당성을 본 과업에서 도출한 자료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운영방안, 설립에 따른 영향 등을 검토함.

-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는 본 과업의 추진내용 중 핵심사항을 요약정리하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2. 과업의 수행절차

- 본 과업의 수행절차는 다음의 [그림 1-1]과 같음.



[그림 1-1] 과업의 수행절차

제 II 장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 ① 강원도 일반 현황
- ② 강원도 출연기관 현황
- ③ 관련법규 검토

제Ⅱ장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① 강원도 일반 현황

1. 기구 · 인력

- 본청 : 1담당 6명(시설 3, 행정 1, 학예 2)
- 시군 : 18담당 55명(행정 25, 시설·공업 10, 학예 19, 경력관 1)
- 「문화재담당」 설치
 - 도 : 본청(시설직 담당)
 - 시 : 춘천시(행정직 담당), 원주시(학예직 담당), 강릉시(학예직 담당)
 - 군 : 영월군(경력관 담당), 철원군(행정직 담당), 인제군(행정직 담당)

2. 예산현황

- 2017년 예산 : 21개 사업 35,216백만원(국비 13,703, 지특 1,750, 도비 8,869, 시·군비 10,134, 자부담 760)

[표 2-1] 강원도 문화재 관련 사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17년 예산(A)	16년 예산(B)	증감액(A-B)	증감율(B/A)
일반회계	35,216	44,865	-9,649	-21.5

* 국비사업(17건) : 26,330백만원, 도비사업(4건) : 8,886만원

* '16년 대비 감액사유 : 2017년 1회 추가경정예산 미반영(향후 증액예정)

3. 문화재 현황

3.1 지정별 현황

- 2017년 2월 현재 강원도의 문화재는 총 642개로 국가지정문화재 191개, 강원도지정문화재 271개, 강원도문화재자료 143개, 등록문화재 37개임.

[표 2-2] 강원도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강원도지정문화재	강원도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642	191	271	143	37

자료 : 2017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강원도

- 국가지정문화재와 강원도지정문화재의 유형별 분포는 [표 2-3] 및 [표 2-4]와 같음.

[표 2-3] 국가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민속문화재	명승	국가무형문화재
191	11	78	18	44	11	25	4

자료 : 2017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강원도

[표 2-4] 강원도지정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271	161	27	79	4

자료 : 2017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강원도

3.2 시·군별 문화재 현황

- 2017년 2월말 현재 강원도 시·군별 문화재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42개 중에서 강릉시가 128개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원주시 74개, 평창군 62개 순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음.

[표 2-5] 시·군별 문화재 분포 현황

(단위 : 개)

구분	총계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강원도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계	국보	보물	사적	천연 기념물	명승	중요 민속 문화재	국가 무형 문화재	계	유형 문화재	기념물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합계	642	191	11	78	18	44	25	11	4	271	161	79	27	4	143	37
춘천	44	12	1	8	1		1	1		18	5	12	1		11	3
원주	74	22	2	12	4	3			1	32	24	3	5		15	5
강릉	128	32	1	16	3	5	4	1	2	58	39	14	5		36	2
동해	20	4		2			1		1	8	5	3			6	2
태백	14	4				2	1	1		4	1	2		1	2	4
속초	24	8		3	1	1	3			9	8		1		7	
삼척	45	14		2	2	5	1	4		18	8	8	1	1	9	4
홍천	37	12		11		1				13	7	6			10	2
횡성	19	1				1				13	10	1	2		3	2
영월	39	13		1	3	5	4			17	11	5	1		9	
평창	62	15	5	5	1	3		1		36	29	3	4		10	1
정선	20	8		1		6		1		10	3	5	1	1	2	
철원	22	4	1	1		2				8	1	6	1		2	8
화천	11	2		1		1				5	2	2		1	1	3
양구	8	2				2				3	1	1	1		3	
인제	16	10		4		1	5			3		3			3	
고성	16	5		2	1			2		5	1	2	2		5	1
양양	37	17	1	9	2	2	3			11	6	3	2		9	
도일원	6	6				4	2									

자료 : 2017년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강원도

3.3 전국 문화재 분포 현황

- 2016년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에 따르면, 전국의 문화재수는 총 8,907개이며, 이중 강원도의 문화재는 638개로 7.2%의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의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9번째로 문화재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전국 문화재 분포 현황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가지정 문화재	988	65	86	67	21	17	22	4	297	187	174	241	195	379	656	308	83	87	3,877
등록문화재	185	18	11	7	13	21	6	0	69	37	27	51	59	77	36	42	22	-	681
시도 지정문화재	478	262	111	163	80	122	84	26	515	271	480	429	421	518	767	835	263	-	1,692
문화재자료	61	96	52	25	30	58	29	13	171	143	86	314	156	234	560	619	10	-	2,657
계	1,712	441	260	262	144	218	141	43	1,052	638	767	1,035	831	1,208	2,019	1,804	378	87	8,907

주)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무형문화재, 중요민속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

자료: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16), 문화재청

4.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 강원도 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총 8개(법인 4, 대학 4)로 강원문화재연구소, 예맥문화재연구원,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국강고고학연구소,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한림대학교 박물관,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등이며,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을 제외하고 지표 및 발굴조사가 가능한 기관임.

[표 2-7] 도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기관명	설립연도	직명	주소	조사가능 범위
강원문화재 연구소	2001	연구실장	춘천시 우두하리길 33(우두동)	지표조사 발굴조사
		행정지원팀장		
		조사팀장		
예맥문화재 연구원	2013	연구원장	춘천시 공지로 149(석사동)	지표조사 발굴조사
		부원장		
		연구실장		
		조사1부장 조사2부장		
강원고고문화 연구원	2013	연구원장	원주시 지정면 지래울로 41	지표조사 발굴조사
		기획연구실장		
		조사연구1팀장		
		조사연구2팀장		
		조사연구3팀장 조사연구4팀장		
국강고고학 연구소	2010	연구소장	춘천시 춘천로 249-0(효자동)	지표조사 발굴조사
		연구실장		
		기획연구실장		
		조사1팀장 조사2팀장		
강원대학교 중앙박물관	1979	관장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지표조사
		학예연구사		
		조교 행정		
한림대학교 박물관	1988	관장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성호관 1층	지표조사 발굴조사
		연구위원		
		연구위원		
		계장(학예연구사)		
		주임(학예연구사) 직원(교육사) 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1979	관장	강릉시 죽헌길 7(지변동)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예연구사		
		조교 조교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2001	관장	원주시 연세대길 1 청송관 117호	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예연구실장		
		학예사		

② 강원도 출연기관 현황

1. 출연기관 현황

- 강원도가 출연한 기관은 총 12개(의료원 5개 제외함)로 가장 최근에 설립한 기관은 강원도해양관광센터(2015년)이고, 가장 오래

전에 설립한 기관은 강원인재육성재단(1974년)임.

- 출연기관들 중 강원도가 해당 기관의 자본총액 전액(출자비율 10%)을 출연한 기관은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강원도해양관광센터,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강원도립극단, 한국여성수련원 등 5개임.

[표 2-8] 강원도 출연기관 현황

구분	설립연도	설립목적	근거	주요사업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총액	출자금(비율)
강원연구원	1994	조사연구활동을 통한 정책개발가능 수행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 기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정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주요 현안 사항에 관한 조사 연구	21,800,000,000	6,800,000,000 (31%)
강원인재육성재단	1974	인재육성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미래인재육성 강원학사운영 도내장학금운영	16,150,000,000	6,550,000,000 (40.56%)
강원테크노파크	2003	지역혁신거점 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산업기술단지지원에 대한 특별법	산업기술단지 등	63,653,655,000	27,881,085,037 (43.8%)
(재)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원	2009	도내 항체 신약개발의 R&D 거점 구축 및 바이오 항체 산업 육성	강원도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설립지원조례	핵심 항체기술 및 항체치료제 연구 개발 등	10,000,000	5,000,000 (50%)
(재)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2008	강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변화조사연구, 정책개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130,000,000	130,000,000 (100%)
강원신용보증재단	1999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	161,769,460,440	77,119,000,000 (47.4%)
(재)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1997	도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세계화 촉진	민법 제32조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	21,131,000,000	15,837,000,000 (65.6%)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2015	강원도 크루즈선 유치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크루즈 관광사업 육성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크루즈 유치 및 홍보, 마케팅	1,000,000	1,000,000 (100%)
강원문화재단	1999	지역문화예술지원, 우수인재 육성, 문화유산 발굴 보존을 통한 강원문화 창달	·민법 제32조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5장	·문화예술활동지원 ·문화유산발굴보존 ·문화예술정책 개발 ·예술인발굴 지원	21,751,000,000	13,170,000,000 (60.5%)
강원국제미술전람회민속예술축전조직위원회	2014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인 문화 올림픽으로 개최	·민법 제32조 ·강원도국제미술전람회조직위원회설립지원조례	강원국제미술전람회(평창비엔날레), 국제민속예술축전 개최	1,000,000	1,000,000 (100%)
강원도립극단	2013	2018평창겨울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	강원도립극단설립지원조례	연극공연	300,000,000	300,000,000 (100%)
한국여성수련원	2009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 양성평등사회 실현	강원도 조례 제3284호	교육연수 대관	10,000,000	10,000,000 (100%)

주) 강원도 출자기관 : (주)강원심층수, 열열개발주식회사 2개
 강원도 출연기관 중 의료원은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삼척의료원, 영월의료원 등 5곳임.

2. 출연금 현황

- 최근 3년 동안(2014~2016) 강원도의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현황을 살펴보면,

[표 2-9]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별 출연금 현황			
	계	2014	2015	2016
합계	74,249,590,000	17,620,000,000	26,513,000,000	30,116,590,000
강원연구원	9,435,000,000	3,000,000,000	3,300,000,000	3,135,000,000
강원인재육성재단	15,555,590,000	1,350,000,000	5,700,000,000	8,505,590,000
강원테크노파크	21,964,000,000	3,000,000,000	8,813,000,000	10,151,000,000
(재)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원	3,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재)한국기후변화 대응연구센터	2,215,000,000	850,000,000	700,000,000	665,000,000
강원신용보증재단	6,450,000,000	2,470,000,000	2,050,000,000	1,930,000,000
(재)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3,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1,000,000,000
강원도 해양관광센터	980,000,000	-	500,000,000	480,000,000
강원문화재단	4,500,000,000	1,900,000,000	1,300,000,000	1,300,000,000
강원국제미술 전람회민속예술 축전조직위원회	3,000,000,000	1,400,000,000	750,000,000	850,000,000
강원도립극단	1,750,000,000	750,000,000	500,000,000	500,000,000
한국여성수련원	2,400,000,000	900,000,000	900,000,000	600,000,000

3. 재정지원 현황

- 강원도 출연기관에 대한 2016년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금액은 14,332백만 원이며 강원연구원에 1,457백만 원, 강원테크노파크에 1,138백만 원, 강원문화재단에 11,737백만 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표 2-10] 재원지원 현황

(단위 : 원)

구분	지원목적(사업명)	지원금액
	총 계	14,332,927,800
	계	1,457,700,000
강원연구원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550,000,000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85,200,000
	강원지역 일자리목표 공시제 컨설팅사업	140,000,000
	강원지역 고용포럼	62,500,000
	강원도지역경제교육센터운영	20,000,000
	2016년 탄광지역 주민창업교육컨설팅사업	130,000,000
	2016년 탄광지역 소통과 상생 기반구축 사업	300,000,000
	탄광지역 향토식품산업육성사업	100,000,000
	2016년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사업	20,000,000
	DMZ포럼·통일을 위한 준비 그리고 강원도	50,000,000
	계	1,138,017,000
강원테크노파크	강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기관 연계 네트워킹 사업	5,000,000
	강원 TP 기업지원 대표브랜드사업(해외BIZ플랫폼)	130,000,000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 기술기업육성지원사업	45,000,000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전시회 지원사업	44,200,000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허 및 규격획득 지원사업	21,400,000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생산지원사업	52,000,000
	세마믹스소재산업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사업	43,000,000
	웰니스식품산업 실무자 역량강화	43,000,000
	지역자원기반형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사업	129,000,000
	캐나다엘버타주교류협력사업비	15,000,000
	2016년 교육혁신프로젝트지원사업 보조금 수입	54,967,000
	2016 GTI 연계 글로벌 BIZ 네트워킹	16,000,000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비	200,000,000
	2020강원첨단산업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111,450,000
	플라즈마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	100,000,000
	동북아 교류협력사업	10,000,000
	미국 BIO 국제 네트워킹사업	30,000,000
	2015 플로리다국제이로기전전시회	23,000,000
	중국 국제건강산업박람회 참가	30,000,000
2016 이태리 볼로냐 미용박람회 참가	35,000,000	
	계	11,737,210,800
강원문화재단	참가국가별응원프로그램제작	200,000,000
	1시간1대표문화예술작품창작지원	300,000,000
	공연예술연급공간운영사업	130,000,000
	전문예술창작지원	707,000,000
	공연장상주단체육성	504,000,000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	100,000,000
	우리가락우리마당	100,000,000
	문화예술기획지원	150,000,000
	통합문화이용권카드사업	2,997,000,000
	사랑티켓사업	25,000,000
	학교예술강사지원	3,639,263,800
	광역센터사업비	150,000,000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	131,000,000
	토요문화학교지원	476,000,000
	자율연계협력기획사업	30,000,000
	창의예술캠프우락부락	12,500,000
	문화이모작	40,000,000
	인생나눔교실사업	376,800,000
	지역특성화매칭펀드	40,000,000
	평창대관령음악제	984,000,000
문화재돌봄사업	644,647,000	

③ 관련법규 검토

1. 민법

- 민법은 단체에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한 「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표 2-11] 민법의 주요내용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법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이 법(약칭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표 2-12] 지방출자·출연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 시 행 령	<p>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p>	<p>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p>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을 본다.</p> <p>③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p>
	<p>법 제5조 (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등)</p>	<p>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관계 법령에 따라 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p> <p>1. 출자·출연 기관이 설립된 경우: 신규 지정 2.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p>
	<p>법 제7조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p>	<p>④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p> <p>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표 2-12] 계속

구분	조항	주요내용
	시행령 제7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 및 검토 결과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추가로 출자하거나 전년보다 증액하여 출연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회계연도에 출자기관에 출자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그 출자기관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2.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기관에 출연하려는 금액의 총액이 직전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 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2.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토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지방 일간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의견 제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 · 시 행 령	시행령 제8조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등)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내용 2. 제공하는 서비스와 재화 3. 설립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수입과 지출 4. 설립 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 보유계획, 지원금 지급 계획 5. 설립 후 5년간 기구와 인력의 운영 계획 6.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자·출연 기관의 현황 7.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이 영 제7조제4항 후단에 따른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내용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의의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5억원 나. 출연금: 2억원 2.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출자·출연하는 금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 가. 출자금: 3억원 나. 출연금: 1억원

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이 법(약칭 “매장문화재법”이라 함)은 매장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의 원형을 유지·계승하고,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조사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표 2-13] 매장문화재법 주요내용

구분	조항	주요내용
법 · 시 행 규 칙	법 제24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①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설립된 부설 연구시설 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5.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른 한국문화재단 ②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 등록 절차, 조사 요원의 자격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 및 장비의 기준 등 조사기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조사기관과 지표조사 또는 발굴 조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공사 관련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발굴 분야별 조사기관의 종류는 육상지표조사기관, 육상발굴조사기관, 수중지표조사기관, 수중발굴조사기관으로 나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 법 제24조에 따른 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 현황 1부 2. 시설 현황 1부 ⑤ 조사기관의 대표자는 제3항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조사기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그 등록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 이 기준은 충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없이 기관 설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타당성검토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설립 전 행정안전부(시도) 사전 협의 시 협의 사항 및 협의 방법을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시도)의 협시 고려 사항 및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방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

● 대상사업의 범위(법 제4조 제1항)

-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
-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대상사업 해당 여부 판단

- 대상사업의 범위는 폭넓게 인정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는 부적합
- 다른 법령에서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정한 사무는 부적합
-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이 요구되는 사업은 가능하나, 순수 민간영역에서 수행될 수 있는 사업은 부적합

■ 출연기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 설립

■ 행정안전부·시도 간 1차 협의 적용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는 출자 또는 출연기관
 - 다만, 설립 이후 5년간 출자·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다음 금액 미만인 경우 협의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제3항)

※ 시·도 : 출자금 5억 원, 출연금 2억 원/시·군·구 : 출자금 3억 원, 출연금 1억 원

5. 관련법규 요약 및 시사점

구 분		검 토 내 용
내용 요약	민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안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함.
	지방출자출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매장문화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 할 수 있음.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총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시도간 1차 협의 적용대상. 단, 설립 이후 5년간 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2억원 미만인 경우 협의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제3항)
시 사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공공성이 강하 사업으로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총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 주무관청(출연기관-강원도)의 허가를 받고 강원도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요건을 갖춰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음. 	

제 III 장

유사사례 및 주민설문 조사

- ① 유사사례 조사
- ② 주민설문 조사

제III장 유사사례 및 주민설문 조사

① 유사사례 조사

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1 설립목적

- 문화재 시·발굴 등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 출토유물의 고고학적인 자료보존 및 활용
-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

1.2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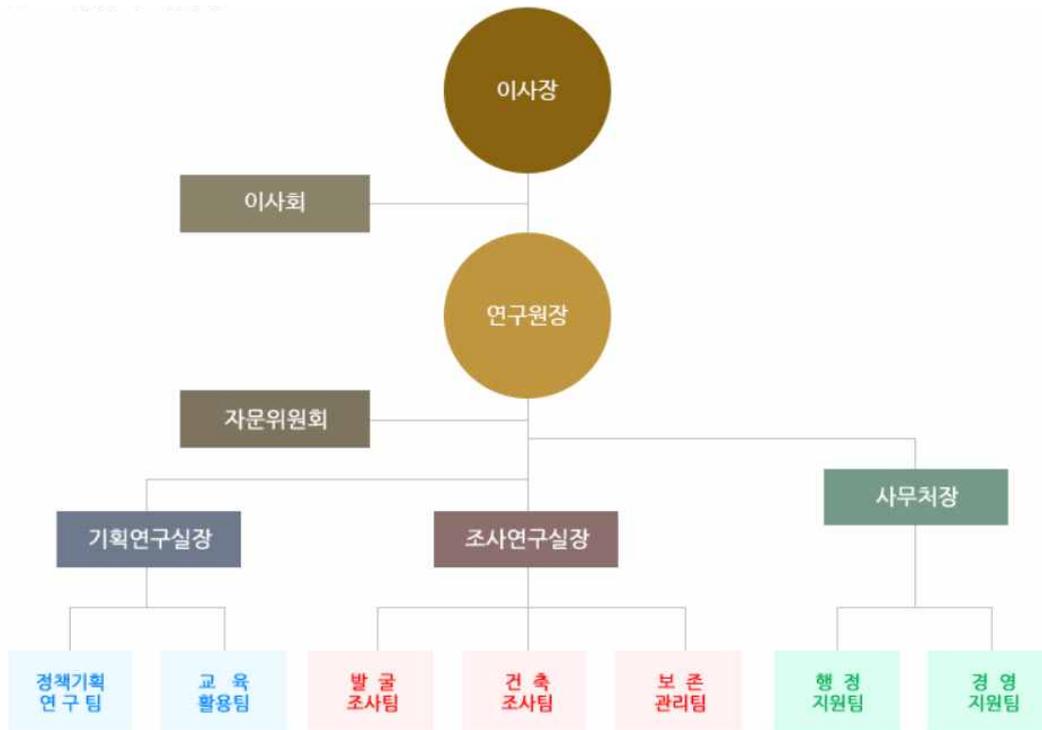
■ 주요사업

- 민족문화유산(지정·비지정·매장문화재)의 보호, 보존 운동
- 문화유산의 총체적인 보존관리체계 확립
- 문화유산 조사, 연구 및 자료 발간
-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1.3 조직과 인력 현황

■ 조직 구성

- 1처(사무처), 2실(기획연구실, 조사연구실), 7팀(행정지원팀, 경영지원팀, 정책기획연구팀, 교육활용팀, 발굴조사팀, 건축조사팀, 보존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직도

■ 인력 현황

- 총인원 60명으로 임원 8명(상임 1, 비상임 7), 직원 52명(일반정규직 50, 기간제 2)임.

1.4 재정지원 현황

- 1998년 개원, 개원시 출자출연금 1억 + 인건비 전액(직원 5명, 도 파견직원 3명-5급, 6급, 7급 각 1명)
- 3년간 인건비 전액 지원 4년차부터 50% 지원(2008년까지 인건

- 비 지원)
- 시가 80억 상당 건물 신축 지원(50억 자체예산 + 26억 도 지원)
- 원장, 사무처장은 도 관련 인사 담당
- 인건비는 현재까지 도에서 지원(2억여 원)

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1.1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 출토유물의 보존 및 그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
-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계 확립

1.2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재)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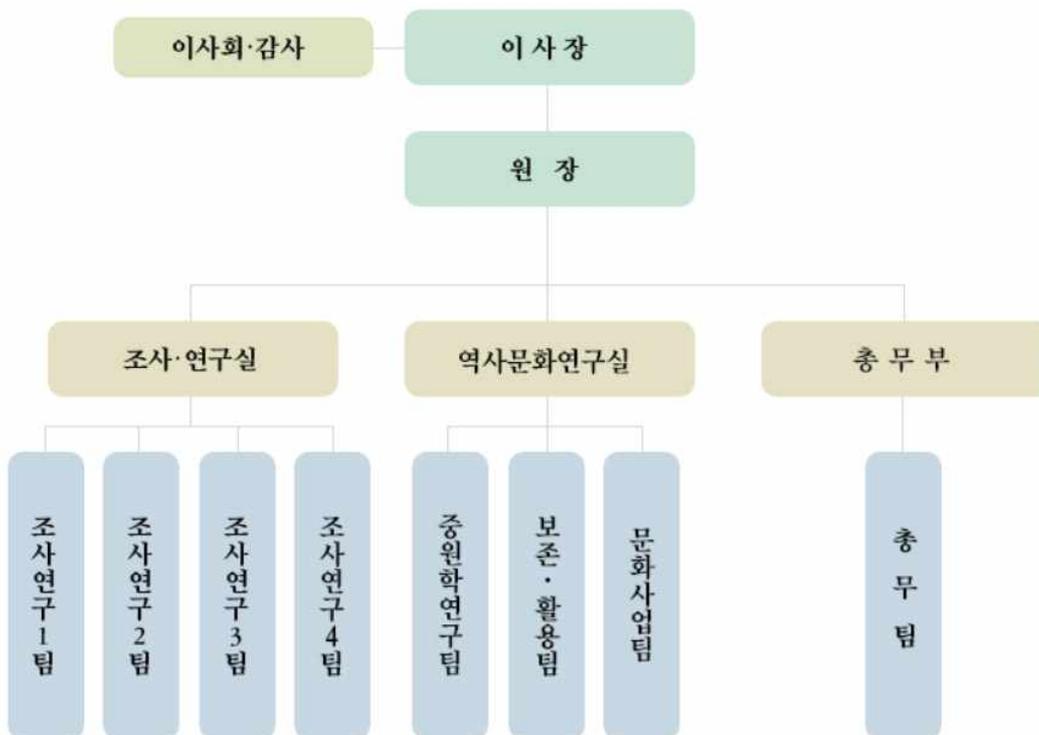
■ 주요사업

- 문화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와 연구 및 자료발간
- 문화유산(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의 보호 관리
-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 전시
-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1.3 조직과 인력 현황

■ 조직 구성

- 2실(역사문화연구실, 조사연구실), 1부(총무부) 8팀(조사연구1팀, 조사연구2팀, 조사연구3팀, 조사연구4팀, 중원학연구팀, 보존·활용팀, 문화사업팀, 총무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2]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조직도

■ 인력 현황

- 총인원 28명으로 원장 1, 실장 1, 부장 1, 팀원 25명(조사연구1팀 4, 조사연구2팀 4, 조사연구3팀 3, 조사연구4팀 4, 역사문화연구실 4, 총무팀 5)임.

1.4 재정지원 현황

- 개원 시 출연금 20억 원 지원 및 건물(건물수리비용, 이전비 지원)
- 개원 후 5년간 총 32억 원 지원(인건비)
- 최근 임대 사용료 지급 : 임대료 도가 지원

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1 설립목적

- 충남의 역사문화 종합적 조사 연구 : 문화도민의 위상 제고
- 찬란한 백제역사 재조명 : 도민의 자긍심 고취
- 문화재 발굴·보존·전시 :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1.2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 주요사업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 충청남도 관련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 전시를 통한 자긍심 함양
-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문화유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충청남도가 계획한 역사 문화 관련 사업 추진
- 외부기관 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연구 의뢰사업
- 충청남도지 편찬 사업
-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3 조직과 인력 현황

■ 조직 구성

- 2실(연구실, 기획행정실), 1관(역사박물관), 7부(지역학연구부, 사료조사부, 백제학연구부, 고고조사부, 박물관운영부, 기획조정부, 행정지원부)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3]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조직도

■ 인력 현황

- 총인원 34명(현원기준)으로 연구직 21명, 관리·기능직 13명임.

1.4 재정지원 현황

- 개원 시 충남발전연구원 산하 기관
 - 분리 시 사업비 18억 원 지원
 - 박물관 사업비 연간 4억 5천만 원 지원(3~4년간)
 - 박물관 사업 본궤도 오른 후 10억 원 이상 지원
 - 국비 + 도비 60억 원 지원으로 수장고 건립(44억 비용)
 - 현재 박물관 운영비 포함 10억 원 이상 지원 및 도지사업 등 사업비 지원
 - 2010년 이후 연간 10억 원 이상 지원-기금 60억 원 적립(시, 도 지원 포함)
- ※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등 인건비 전액 지원

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1.1 설립목적

- 문화유산의 보호 보존 및 조사 연구
- 문화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
- 문화유산의 활용 및 보급
- 민원성 시·발굴조사 시행으로 민원해소
- 기타 학술조사 등 문화재 전승보존방안 강구 등

1.2 설립근거 및 주요사업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 경주시 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 설립 및 지원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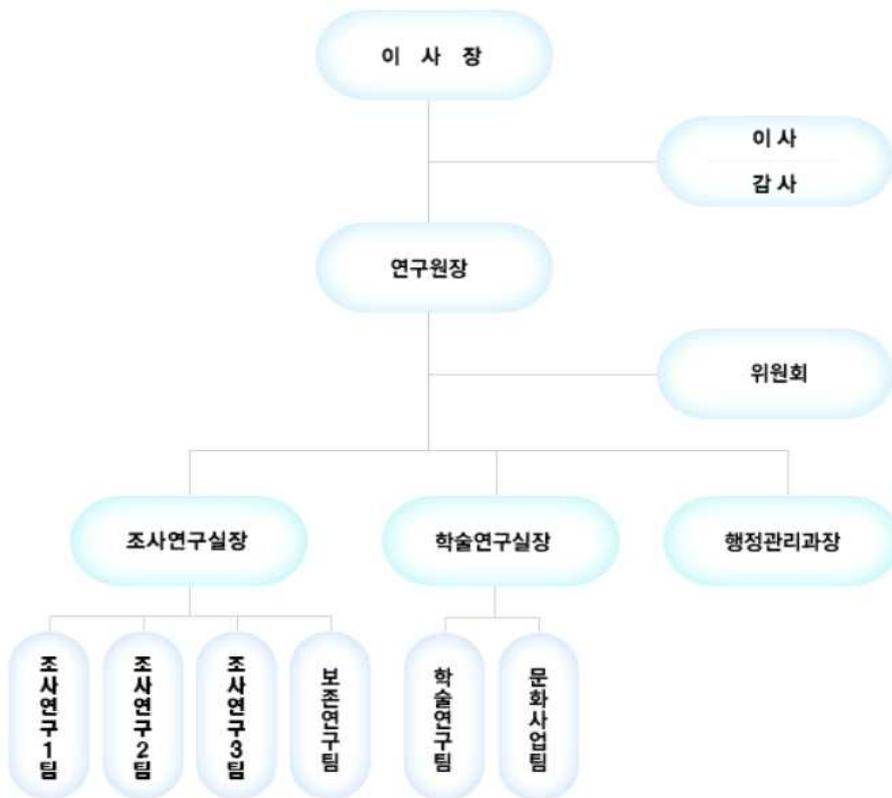
■ 주요사업

-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 유물보존 및 관리
- 문화재 복원 정비계획 수립
- 지역개발 및 경관계획 연구
- 신라학 관련 학술대회 개최
- 문화시민 육성을 위한 시민강좌 개최

1.3 조직과 인력 현황

■ 조직 구성

- 2실(조사연구실, 학술연구실), 1과(행정관리과), 6팀(조사연구1팀, 조사연구2팀, 조사연구3팀, 보존연구팀, 학술연구팀, 문화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4]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조직도

■ 인력 현황

- 총인원 29명(현원기준)으로 원장 1명, 조사연구실 16명, 학술연구실 9명, 행정관리과 3명임.

1.4 재정지원 현황

- 출연 시 1억 원 지원
- 매년 종합정비계획 등 시책사업 전담으로 운영비 보조

5. 유사사례 조사의 시사점

- 조직은 문화재연구원의 주요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 2실, 1처(또는 과), 6~7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인력은 30명~50명 정도로 원장, 실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기능직 보다 연구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음.
- 문화재연구원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둔 사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경상수입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도(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국임.

② 주민설문 조사
1. 조사개요
1.1 조사 목적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출연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

립하는데 따른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조사 내용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강원도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내용은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사항,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함.

[표 3-1] 주민설문 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노력에 대한 만족도,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중요 요소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의 찬반의견,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요소,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대, 결혼여부, 직업, 거주지역

1.3 조사 설계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과 관련하여 강원도민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한 모집단 및 표집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조사도구, 조사기간 등은 다음과 같음.
- 설문에 응답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총 338부이며, 이 중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통계분석에 이용된 설문지는 총 317부임.

[표 3-2] 주민설문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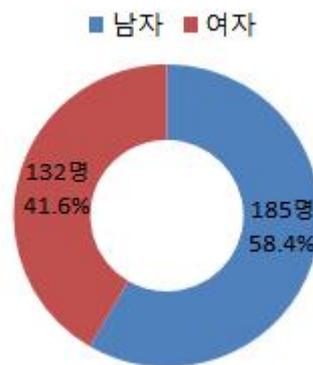
구분	내용
1. 모집단	• 강원도민(춘천, 원주, 강릉 지역 주민)
2. 표집방법	• 표본조사
3. 표본크기	• 317명(강릉 102, 원주 107, 춘천 108)
4. 조사방법	• 설문지에 대한 자기 기입식
5.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6. 조사기간	• 2017년 10월 10일 ~ 2017년 10월 20일(11일간)

2. 조사결과

2.1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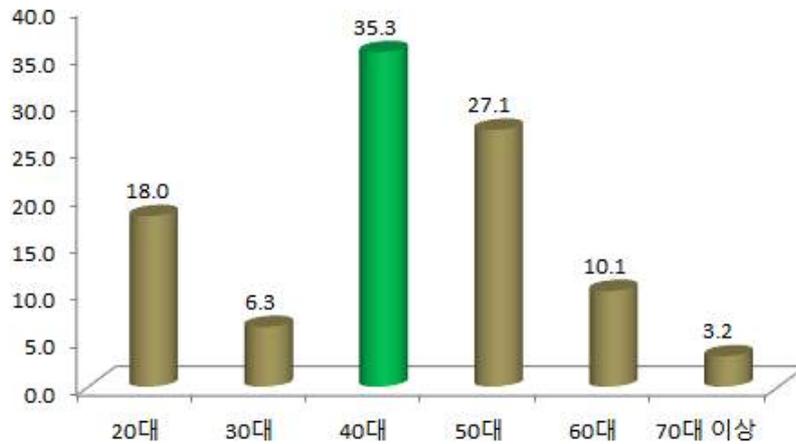
가. 성별과 연령

- 응답자는 남성이 185명(58.4%), 여성이 132명(41.6%)으로 나타나, 남성의 응답률이 조금 높게 나타남.



[그림 3-5] 응답자의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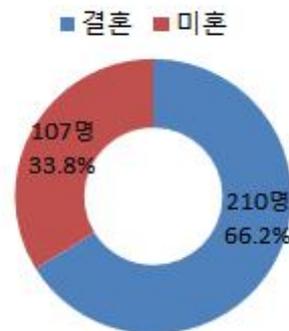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령분포는 40대가 112명(35.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86명(27.1%), 20대가 57명(18.0%), 60대가 32명(10.1%) 순으로 비교적 중년층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그림 3-6] 응답자의 연령 분포

나. 결혼

- 응답자의 결혼여부는 결혼한 사람이 210명(66.2%), 결혼하지 않은 사람(미혼)이 107명(33.8%)으로 결혼한 사람이 약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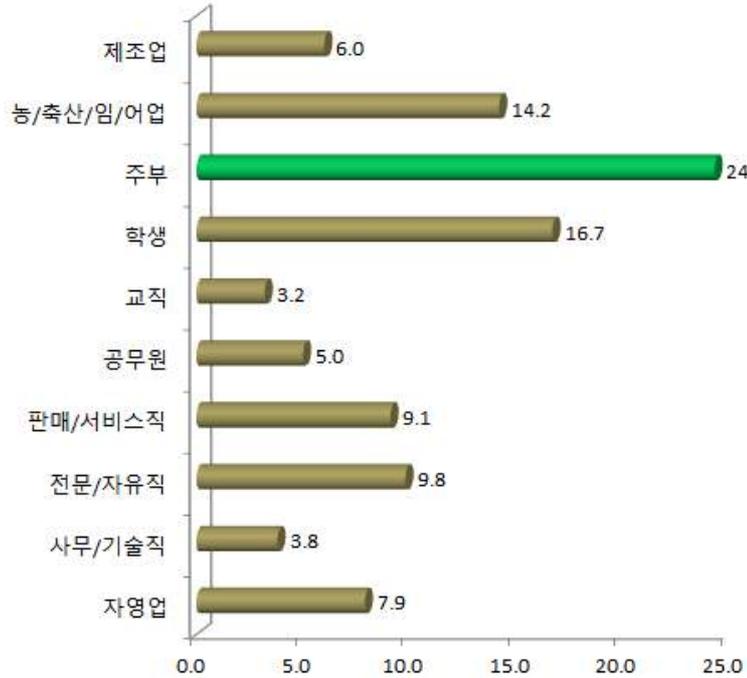


[그림 3-7] 응답자의 결혼 유무

다. 직업

- 응답자의 직업은 주부가 77명(24.3%)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이 53명(16.7%), 농/축산/임/어업이 45명(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전문/자유직, 판매/서비스직, 자영업, 제조업, 공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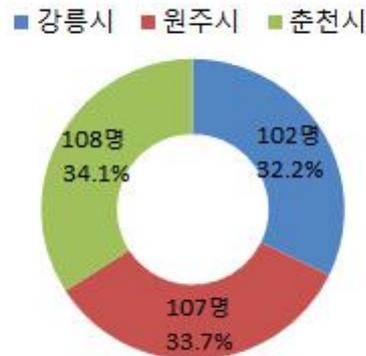
원, 사무/기술직, 교직 순으로 이들 직업군은 10% 미만으로 나타남.



[그림 3-8] 응답자의 직업 분포

라. 거주 지역 분포

-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춘천시 108명(3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주시 107명(33.7%), 강릉시 102명(32.2%)으로 나타나, 세 지역의 표본이 고르게 조사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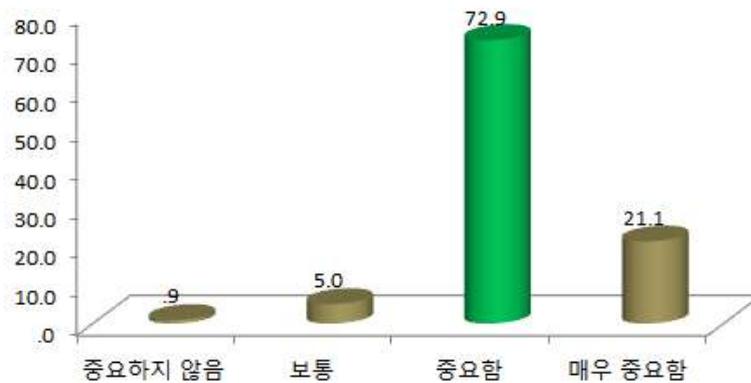


[그림 3-9] 응답자의 거주 지역 분포

2.2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가.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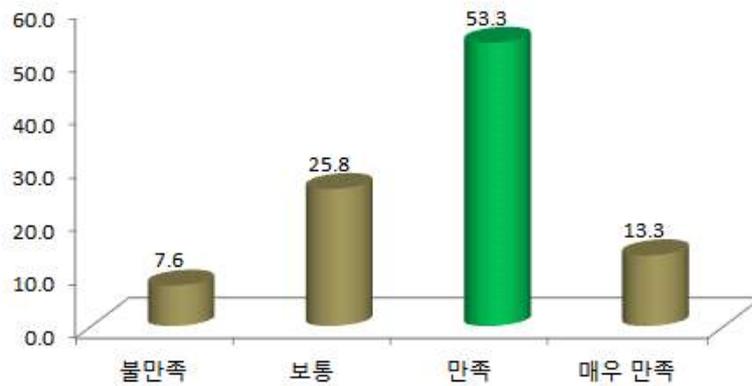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강원도민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전체응답자 317명 중 231명(72.9%)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67명(21.1%)은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강원도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0]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

나.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만족도

-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강원도민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에서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69명(53.3%), '매우 만족'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42명(13.3%)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강원도의 문화재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 노력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1]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만족도

다. 강원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상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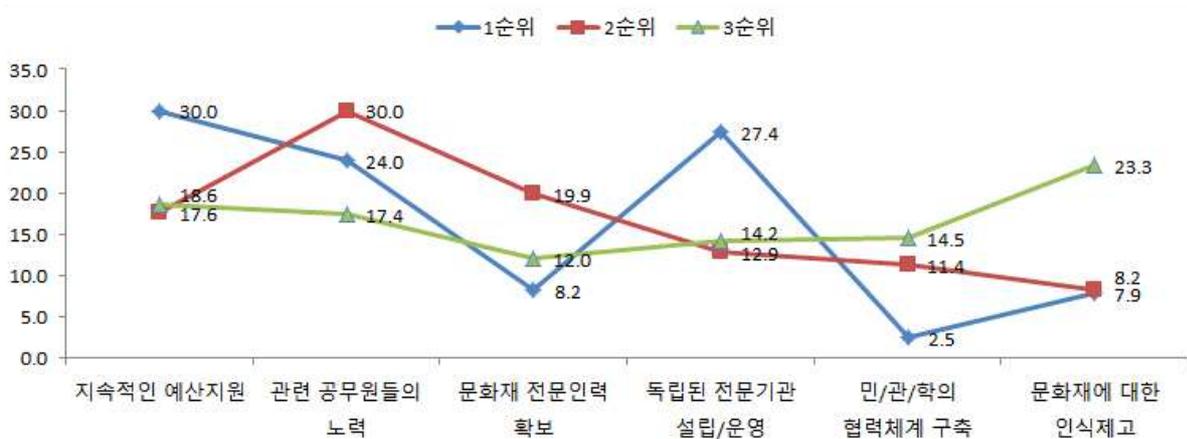
- 다른 도나 광역시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강원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강원도민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잘하고 있음’에 응답한 사람이 176명(55.6%), ‘매우 잘하고 있음’에 응답한 사람이 34명(10.8%)으로 나타나, 강원도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도민들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3-12]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

라.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복수 응답)

- 강원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서 1순위로 ‘지속적인 예산지원’(30.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2순위로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30.0%)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3순위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23.3%)를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3]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2.3 강원도 문화재 출연기관 설립에 관한 사항

가. 독립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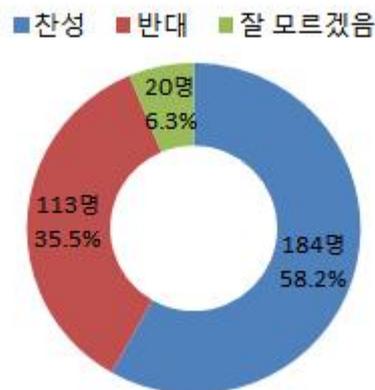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317명 중 ‘필요하다’고 응답자한 사람은 55.2%(175명),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7%(9명)으로 나타나, 독립적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4] 독립적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

나.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찬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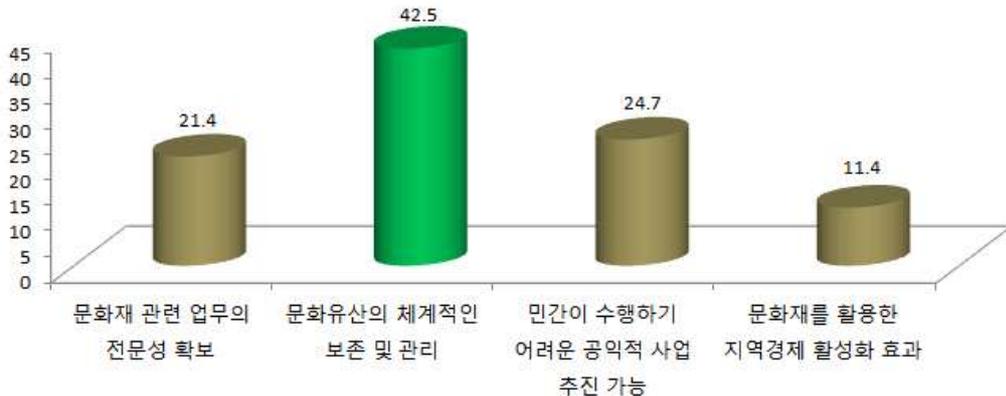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317명 중 ‘찬성한다’고 응답자한 사람은 58.2%(184명), ‘반대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5%(113명),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6.3%(20명)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15] 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찬반 여부

다.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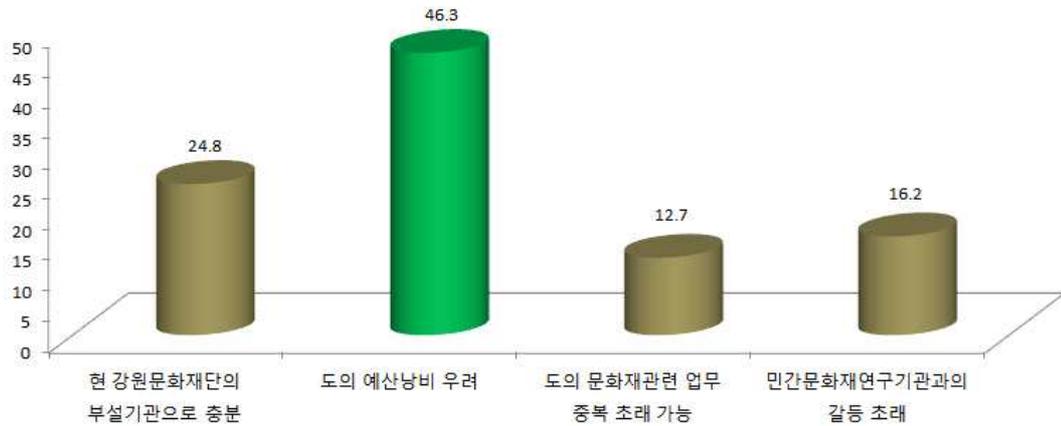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찬성에 응답한 184명 중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42.5%(78명),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추진 가능’이 24.7%(45명),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가 21.4%(39명),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1.4%(21명)으로 나타나,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주된 찬성 이유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3-16]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이유

라.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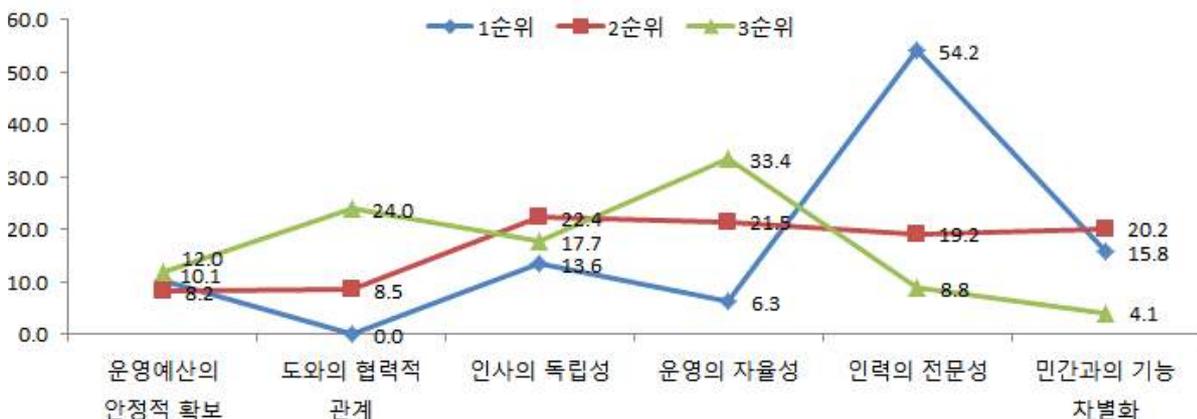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반대에 응답한 113명 중 ‘도의 예산낭비 우려’가 46.3%(52명), ‘현 강원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충분’하다는데 24.8%(28명), ‘민간문화재연구기관과의 갈등 초래’가 16.2%(18명), 그리고 ‘도의 문화재관련 업무와 중복 초래 가능’이 12.7%(14명)으로 각각 나타나,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주된 반대 이유는 도의 예산낭비 우려와 현 강원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17]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

마. 출연기관인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될 경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서는 1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항은 ‘인력의 전문성’이 54.2%(172명)이고, 2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항은 ‘인사의 독립성’이 22.4%(71명), 3순위로 가장 많이 응답한 사항은 ‘운영의 자율성’이 33.4%(106명)으로 나타나,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인사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3-18] 출연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

바.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이바지함’에 응답한 사람이 53.0%(168명), ‘크게 이바지함’에 응답한 사람이 3.5%(11명)으로 나타나,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5%(179명)으로 나타남.



[그림 3-19] 출연기관의 설립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

3. 조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17명 중 231명(72.9%)가 중요하다고 응답함.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17명 중 과반수 이상인 66.6%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 실태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317명 중 과반수 이상인 66.4%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인 예산지원’(30.0%),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30.0%), ‘문화재에 대한 인식 제고’(23.3%)인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317명 중 과반수가 넘는 57.9%(184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응답자 317명 중 과반수가 넘는 58.2%(184명)것으로 나타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주된 찬성 이유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주된 반대 이유는 도의 예산낭비 우려와 현 강원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충분하다는 것으로 나타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인사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5%(179명)으로 나타남.

시
사
점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전체 응답자 317명 중 58.2%(184명)으로 나타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임.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인사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제Ⅳ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 ① 설립개요
- ② 여건분석 측면
- ③ 사례 및 설문조사 측면
- ④ 주민복리 측면
- ⑤ 검토 의견

제Ⅳ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① 설립개요

1. 설립의 의의

- 강원도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강화
 - 강원도 내 문화재에 대한 보존·보호 및 각종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강원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킬 수 있도록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 필요
 - 강원도 출연 독립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행정기관에서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전문분야에 대한 사업을 전담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강화
 - 학술 용역 위주의 문화재 조사 기능과 함께, 문화재 관리, 전시,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도 출연 독립법인으로 새 출발하여 공공 연구기관으로 성장
- 문화재 관련 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확대
 - 문화재 관련 위탁(협력)사업을 전문 인력이 전담하여 도민에게 문화유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전시기획 등 각종 사회교육 활동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 도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교육 및 각종 콘텐츠 개발로 강원도민의 지역 문화 향유 및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기타 부수적인 효과
 - 강원문화재단 부설기관의 한계 극복 가능 : 도내 문화재 발굴조사만 가능한 구조인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소를 도 출연 독립법인으로 전환 설립하여 중앙부처(문화재청) 법인 등록 후

전국단위 발굴조사 용역 참여 가능토록 구조개선

- 안정적 수입구조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인력 진입
- 도내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 사회교육활동을 통한 문화재관리 전문 인력 양성

2. 도 출연기관 설립의 장·단점

2.1 장점

- 도 출연 독립법인으로서의 대외적 위상 강화
- 문화재청 법인설립 허가 가능
- 활동 영역 확대로 전국의 문화재 발굴 참여 가능
 - 용역 수주 증가 기대
- 국가 정책사업에 적극 참여 가능
- 국비 및 도비 지원 학술 발굴 조사 주력
 - 지정문화재 정비계획에 따른 학술조사 증가
 - 사설기관과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 도 출연 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도비 투입으로 안정적인 수입구조 기대
 - 잉여금의 공익사업 투자 등 선순환 구조
- 사업영역의 다각화 추진 가능
 - 문화재 정책 수립 등 연구 인력의 전문성 강화

2.2 단점

- 공기관으로서 예산운영의 비탄력적 구조
- 신생 법인으로 신용도 평가에서 불리
 - 단기적으로 용역 적격심사에 불리

3. 설립근거 및 절차

3.1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매장문화 조사기관의 등록)

3.2 설립절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은 다음과 같이 크게 5단계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됨.
 - 제1단계 : 설립방침 결정단계
 - 제2단계 :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 제3단계 : 설립협의 단계
 - 제4단계 : 조례·정관 제정 단계
 - 제5단계 : 설립단계

[표 4-1] 출연기관 설립절차

단 계		내 용	소요일수	관련법령
제1단계	설립방침 결정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요건 검토 및 형태 결정 ○ 설립 검토안 마련 ○ 설립추진 기본방침 결정 ○ 타당성 검토전 1차 협의 	60일	법 제2조 법 제 4조
제2단계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타당성 검토계획 작성 - 설립타당성 검토(설립타당성 검토용역기관과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 실시) ○ 설립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주민의견 수렴 ○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조례 제정(안) 마련 	150일	법 제7조 시행령 제7조
제3단계	설립 협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또는 시도와 협의(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생략 	30일	법 제7조 시행령 제8조
제4단계	조례 · 정관 제정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결과 공개(주민의견 반영 여부, 운영심의위 심의 결과, 협의 결과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안) 입법 예고, 의회 심의 등 조례제정 · 공포 	40일	법제 4조
제5단계	설립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공모 및 임명 ○ 정관 및 제규정 제정 ○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출연기관) 	45일	법 제8조 법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등기 ○ 지정 · 고시 신청 	30일	법 제5조 시행령 제3조

주) 단계별 소요일수는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일수를 예시한 것으로 각 설립단계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민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는 고려하지 않음

자료 : 지방 출자 · 출연기관 설립기준, 행정안전부(공기업과), 2016. 4

② 여건분석 측면

1. 경영환경 분석

1.1 정책방향(정부정책)

- 국민 눈높이에 맞춘 매장문화재 제도 운영
 - 사전 매장문화재 정보제공으로 건설공사 시 예측가능성 제고
 - 발굴조사기간 단축, 현장 및 발굴조사보고서 일반 공개
- 문화재 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시관리 활동 강화
 - 돌봄사업을 통한 문화재 사전 예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 문화재 상시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돌봄단체-지자체-문화재청)

1.2 외부 경영여건

- 개발사업의 침체로 인한 발굴수요의 감소로 극심한 경쟁 체제
 - 도내 발굴시장 사설업체 잠식, 민간 용역 저가낙찰 속출
- 도·시·군 학술발굴 사설업체 수주 편중 심화
- 흰개미 모니터링 특화 등 돌봄사업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1.3 내부 경영여건

- 장기 발굴조사 사업을 통한 연구소 운영 기본 재원 마련 시급
- 매장문화재조사용역 외 학술용역 수행 등 사업 다각화 시도
- 수주·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영재원 고갈시 대비 방안 마련 필요

1.4 고객니즈

- 용역에 걸리는 시·발굴 소요기간 단축 및 매장문화재 관련 문화

재청 관련 사항의 지속적인 서비스 요청 수요 증가

- 돌봄사업을 통한 시·군 지자체 관리 문화재의 경미 보수 등 수요 증가

1.5 시사점

- 조사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필요, 도·시군의 학술 발굴 사업의 정책적인 수주 지원 필요
- 종사자 교육을 통한 돌봄 사업 활동 내실화와 전문 인력 활용 특성화 지속 추진, 차별화
- 지자체 조사 수주 유도 및 돌봄 사업과 연계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자금조달 방안 마련과 경상경비 절감 노력 필요
- 사업 품질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 전문성 제고 시책 추진

2. 관련법규 검토

2.1 민법

- 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출연기관-강원도)이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 법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 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함.

2.2 지방출자출연법

-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설립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2.3 매장문화재법

-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사업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매장문화재 발굴 관련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 할 수 있음.

[표 4-2]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14조 제3항 관련)

구 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육상발굴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향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발굴에 필요한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육상지표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1명 ○ 준조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온·향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표 4-2] 계속

구 분	인력 기준	시설 기준
수중지표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2명(문화재 분야 1명, 수중 분야 1명) ○ 준조사원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온·항습 수장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33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정밀해상위치 측정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2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수중발굴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단장 1명 ○ 책임조사원 1명 ○ 조사원 3명(문화재 1명, 수중 분야 2명) ○ 준조사원 2명 ○ 보조원 2명 ○ 보존과학연구원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온·항습 수장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 보존처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연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정리시설: 100제곱미터 이상 ○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측·측량·촬영 기자재 - 수중조사에 필요한 기자재: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 잠수사 감압챔버, 수중무인카메라(ROV), 수중비디오카메라(고탁도용), 위성위치측정기, 수중영상전송기, 음향측심기, 수중저지탐사기, 측면주사음향영상탐사기, 지자기탐사기, 스쿠버 장비(4조 이상) - 보존처리 기자재 ○ 도난 예방 및 방재에 필요한 시설

※ 비고

가. 조사단장은 책임조사원 겸임이 가능하다.

나.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및 조사원은 조사기관의 상근직 조사 요원이어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호의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 대한 등록기준에 따른다.

가. 육상발굴조사기관의 인력 기준 중 조사원, 준조사원, 보조원은 각 1명으로 한다.

나. 보존처리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보존과학연구원에 대한 인력 기준, 보존처리시설 및 보존처리 기자재에 대한 시설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2.4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 주민 복리에 관한 사업이거나 공공성이 강하고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경우 ⇒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기관 설립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은 행정안전부·시도 간 1차 협의 적

용대상. 단, 설립 이후 5년간 출연하는 금액의 총합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협의 생략 가능(시행령 제8조 제3항)

2.5 시사점

- 문화재 관련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 주무관청(출연기관-강원도)의 허가를 받고 강원도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 법인 형태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등록요건을 갖춰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음.

3. 검토 결과

- 경영환경 분석 결과, 현재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첫째, 조사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필요, 도·시군의 학술 발굴 사업의 정책적인 수주 지원 필요
 - 둘째, 종사자 교육을 통한 돌봄 사업 활동 내실화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특성화와 차별화의 지속 추진
 - 셋째, 지자체 조사 수주 유도 및 돌봄 사업과 연계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 넷째,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자금조달 방안 마련과 경상 경비 절감 노력 필요
 - 다섯째, 사업 품질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 전문성 제고 시책 추진
- 관련법규 검토 결과, 문화재 관련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 주무관청(출연기관

-강원도)의 허가를 받고 강원도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영환경 분석과 관련법규 검토 결과,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독립하여 (가칭)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③ 사례 및 설문조사 측면

1. 사례조사

- 지역 문화재의 보호·보존 및 조사·연구, 지역 문화재의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 지역 문화재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위해 타 시·도가 설립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임.
- 이들 연구원은 지자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역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 계획 수립, 학술연구와 도(시)민 강좌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선양하고 도(시)민이 향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문화재는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긴 우리 민족의 소중한 유산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창출하고, 그 가치가 온전히 전승하여 도(시)민들이 향유될 수 있도록 이들 연구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이들 연구원의 조직은 문화재연구원의 주요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분 2실, 1처(또는 과), 6~7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리고 인력은 30명~50명 정도로 원장, 실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리·기능직 보다 연구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음.

- 문화재연구원이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역점을 둔 사업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경상수입으로 경상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당 도(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형국임.

2. 설문조사

-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출연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는데 따른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 결과,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음.
- 특히,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317명) 중 58.2%(184명)으로 나타남.
- 그리고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출연기관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로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와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3. 검토 결과

- 타 시·도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문화재연구원의 사례조사 결과, 이들 연구원은 지역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 계획 수립, 학술연구와 도(시)민 강좌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선양하고 도(시)민이 향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그리고 이들 연구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한편, 설문조사 결과, 강원도민들은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317명) 중 58.2%(184명)으로 나타남.
- 따라서 유사사례와 강원도민의 설문조사 결과,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독립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주민복지 측면

1. 지역 문화재 활용과 주민복지

- 지역 문화재 활용은 지역 문화재와 관련된 특정 조직 및 인력이 지역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예술적·경관적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 문화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 지역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관람·관객형 :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의 공연, 문화행사
 - 참여·체험형 : 관람객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체험을 목적으로 개최
 - 행사형 : 특정 장소나 기일에 맞춰 개최하는 행사
 - 강좌형 : 관객에게 교육이나 소양을 넓히기 위한 언어적인 행사
- 지역 문화재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이자 지역경쟁

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임. 지역 문화재를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지역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즉, 문화재의 공급자인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는 문화재의 공개 및 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장료 등의 직접적 수입과 음식, 숙박, 쇼핑을 통한 간접적 수입 확보로 주민과 지역,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2. 지역 문화재 활용의 한계

- 지역 내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확보의 미흡
 -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은 지역에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그를 기반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며,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의 확보는 문화재 활용을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행정기관과 실제 문화재 활용사업을 진행하는 활용 주체 모두에게 필요함.
- 지역 문화재 활용 주체 간 네트워크 부재
 - 문화재 활용사업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네트워크 구축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활용 담당자-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진행자나 단체-전문가 및 지역민 상호 간에 원활한 소통을 통해 가능함.
- 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연계한 문화재 활용 사업 부재
 -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은 지역의 향토문화 발굴과 함께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음.

3. 지역 문화재 활용을 위한 방안

- 문화분권은 참여정부 당시 국정외제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 과 국가균형발전’ 중 지방분권에서 교육과 문화의 분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다루어졌는데, 문화분권은 문화의 생산·소비·분배에 있어서 탈중양화와 문화다양성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주체적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 주인이 되는 것으로, 지역문화의 자치이며 지역문화주권의 회복을 의미함.

- 하지만 문화재 활용에 있어 문화재청이 2005년 문화재활용과 신설 이후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정책을 통해 다양한 활용사업을 진행 중인 것에 비해, 지역 차원에서 수립되는 문화재 활용 정책은 물론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은 거의 없음.
-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열악함은 지역 내에 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원인임.
- 지역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있어서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본청(정책)-지방청(집행)의 분리 방안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 연구원 또는 문화재 보호재단이나 문화재 관리 공단 등을 설립하자는 내용임.
- 문화재 관련 전문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지역 차원의 문화재 활용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검토 결과

- 지역 문화재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이자 지역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서, 지역 문화재를 특성에 맞게 활용

하는 것은 지역성을 확립하는 동시에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

- 지역 문화재 활용의 한계는 지역 내 문화재 활용 전문인력 확보의 미흡, 문화재 활용 주체 간 네트워크 부재, 지역 향토문화 발굴과 연계한 문화재 활용 사업 부재 등을 들 수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재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마다 독립된 문화재관련 전문조직(예, 문화재연구원, 문화재 보호재단, 문화재 관리 공단 등)을 설립할 필요성이 제기됨.
- 문화재 관련 전문 조직이 만들어진다면 문화재 활용에 있어서도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지고, 지역 차원의 문화재 활용 또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강원도의 지역 문화재 활용을 극대화 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독립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검토 의견

- 경영환경 분석과 관련법규 검토, 유사사례와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지역 문화재 활용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독립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충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 V 장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토

- ① 비전 및 미션의 정립
- ② 위상과 역할
- ③ 운영계획
- ④ 조직 및 인력 구성
- ⑤ 재원조달방안
- ⑥ 설립 타당성 분석
- ⑦ 설립에 따른 영향 분석

제 V 장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 타당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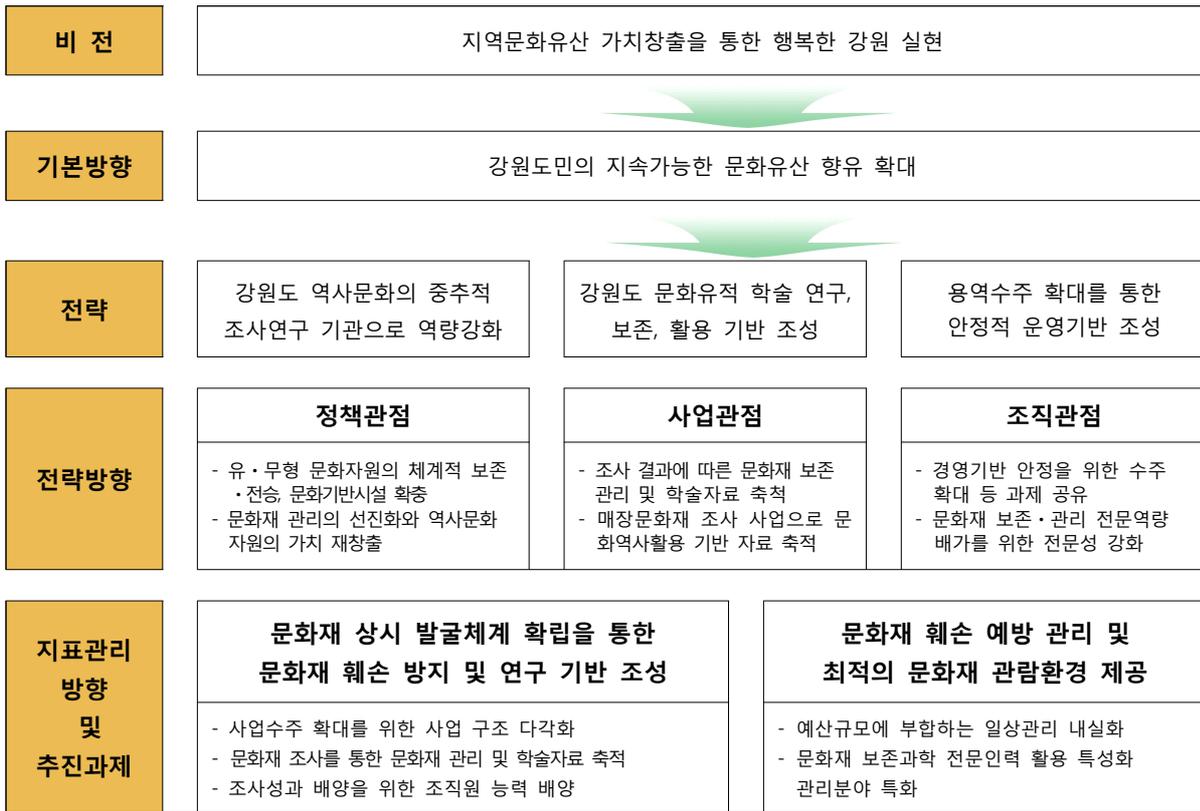
1 비전 및 미션의 정립

1. 미션과 비전

- 문화재 관련 사업을 통해 강원도민의 가치 있는 삶과 희망찬 내일을 책임지는 공적기관을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추구해야 할 지향점으로 삼음.
- 이에 기반 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최종 비전은 “지역 문화유산 가치창출을 통한 행복한 강원 실현”으로 설정하고, 연구소의 미래상인 미션은 “문화재 관련 사업으로 강원도민의 복리증진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설정할 수 있음.

2. SWOT 분석 및 전략 방향 · 과제 도출

<p>외부환경</p> <p style="text-align: right;">내부역량</p>	<p>내부강점(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출연기관의 공공성, 최상위 신용등급 • 세부전공 및 등급별 우수 인력 보유 • 오랜 기관운영으로 다양한 조사DB 보유 • 문화재 보존과학 전문 기술력 보유 	<p>내부약점(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지역 한정된 수주 제한 • 수주 예측불가로 수입예측 불확실 • 문화재 수리 전문가 부족(재정적 요인)
<p>외부기회(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 대행조사기관 업무 실시로 조사용역 확대 • 상피제 완화로 지자체 용역 수주 여건 개선 • 돌봄사업 국도비 예산 지속 확대 • 도내 박물관의 유물 보존처리 중요성 인식 확대 	<p>공격적 전략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출연기관 연구소로 도 발주 수주 및 지자체 지정 문화재 정비계획에 따른 학술 발굴 참여 확대 • 매장문화재 조사 외 문화유산 가치 증대를 위한 사업 추진 • 도내 박물관 협약을 통한 문화재 보존처리 위탁 용역 수행 	<p>약점보완 혁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지원 조사용역 수주를 위한 전략 마련 및 홍보 시행 • 긴축 예산운영을 통한 재원 증대 • 분야별 경미수리 교육 확대
<p>외부위협(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설기관 증가에 따른 용역 수주 과다경쟁 가속화 • 경기 둔화에 따른 조사 수요 감소 • 돌봄 대상 문화재의 목조 문화재 중심의 사업 고도화 	<p>위협극복 혁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 입회관 보유 이점을 살린 연계 조사 확대 • 지자체 업무 담당자 인적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공유 	<p>생존의 혁신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배치 업무공간 통합 추진(예산절감) • 도발주 용역 참여를 통한 안정적 수입 구조 마련, 사업 다각화 • 돌봄 대상 문화재 활용 사업추진
<p>추진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용역수주 활동 지속 강화 및 연구소 사업다각화 • 보존과학 전문인력 활용 창의적인 돌봄사업 특성화 추진 • 연구 품질 제고 및 문화재 보존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그림 5-1]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비전 체계도

2 위상과 역할

1. 위상

- 독립법인으로서의 위상
 - 실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
 - 정책적인 판단에 따른 지원과 중단이 반복될 경우 문화재의 사회적 재화라는 역할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 독립성 보장 필요
 - 사업분야의 독립성을 위해 강원도 문화예술과의 이해관계 협의 후 독자적 사업영역을 갖추고 위상과 역할 체계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 강원도 산하 위탁기관으로 전락하는 역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적인 독립성을 유지
- 민주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이사진의 구성 및 임원선출, 조직 내 인적구성으로 조직운영의 독립성을 보장
- 문화재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
 -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업 전개가 가능한 환경 조성
 - 조직과 인적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
 - 전문기관다운 구성원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 강화
 - 역량과 직무를 고려한 적지적소의 인사를 통한 전문성 극대화
 - 도내 문화재 관련분야를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
 - 공공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체계 내에서 업무 수행
 - 지역민의 문화재 관련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여 문화재관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
 - 도내 현안 및 숙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재 관련 민원 해결을 통한 위상 강화

2. 역할

-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
 - 도내 문화재기관으로서 공공업무 협력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 민·관간 문화재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협력 업무 수행
 - 문화적·제도적 장치로써 지역민과 문화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매개체

- 기존 관 중심행정체계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
- 민간역량이나 자원이 필요한 업무 및 사업의 협력을 통한 공공 목적달성
- 문화진흥 주체자로서의 역할
 - 문화관련 사업의 진흥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
 - 도내 문화재기관으로서 수행 가능한 사업영역 개발
 - 공적인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간협력 공조
- 지역 문화유산 지킴이로서의 역할
 - 강원도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기능을 수행
 - 매장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학술연구전문 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
 - 문화재의 보존 및 계승, 변형 및 창조를 통해 지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 기대
 - 지역민의 역사와 문화체험 기회 확대
 - 유물의 수집 및 전시를 통해 도민에게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도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 복지를 구현
 - 연구소의 사업 다변화를 통한 지역민들에 문화적 향유 제고
 - 문화 향유 기반의 질적·양적 확대를 도모

③ 운영계획

1. 운영 목표

- 도 출연 독립 법인으로서 연구소 위상강화에 따른 활용도 제고
 - 연구소와 도, 18개 시군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

- 각 시군 개발사업과 문화재 조사의 연동장치 구축
- 중장기 주요 시책 및 지자체 학술발굴조사 전담 기관으로 활용
- ※ 학술발굴 :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 공사로 인해 파괴되는 유적에 대한 구제발굴과 달리, 지정문화재 정비 및 복원, 교육 및 문화 관광 자원으로서 유적 활용, 역사적 특수성 확인 등을 위한 학술적 목적으로 진행되는 발굴조사
- 학술 연구 용역 중심의 공기관 업무 영역 확대
 - 도내 지정·비지정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 문화재 정비 복원 및 활용 방안 기획
 - 국가 사적 지정 심의 자료 구축
 - 문화유산 콘텐츠 발굴 및 활용 사업
 - 도내 공립박물관 전시환경 모니터링 및 전문적 관리 협업
- 안정적 수입구조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인력 진입
 - 연구원 신분 안정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 발굴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신진 인력 규모 편성
- 도 출연기관과 사설기관의 역할 조정으로 상생 방안마련
 - 도 차원의 문화재관리 및 전담 기구로서, 수익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역할 변화
 - 연구소의 공공성, 투명성, 객관성, 전문성 제고
 - 사설기관과의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발굴 문제 해소
- 사업 영역의 다각화를 통한 문화재 관련 think tank 역할 수행 연구기관으로 변모
 - 도 출연 연구 기관의 특성화 및 위상 강화
 - 경쟁구도의 구제발굴 ⇒ 학술발굴, 지정문화재 관리, 박물관(전시관) 운영 등 연구 용역 중심으로 전환

⇒ 문화재 조사 + 연구 + 전시 및 교육 기능의 완성

2. 주요 사업구성

■ 사업대상

- 강원도 내 분포하는 문화유산 전체가 사업대상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 문화재청 허가대상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역이 강원도가 아니더라도 사업대상에 포함
- 문화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활용을 위한 학술연구 및 관련 사업

■ 주요사업

- 매장문화재 조사
 -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
 - 문화재 현상변경기준안 마련 연구
 - 문화재 정비계획 수립 연구
 -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문화재 돌봄 사업
 -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
- 강원학 연구
 - 도지 및 시군·읍면지 편찬, 디지털 향토문화전자대전 집필사업
 - 강원도사 연구와 고증, 강원문화 콘텐츠 연구 및 개발
 - 지역사 연구와 고증, 문화유산 조사, 문화정책 및 콘텐츠 연구
 - 학술세미나 개최 및 강원학과 강원문화 발간
- 박물관 및 자료전시관 위탁 관리
 - 유물수집·관리 및 우리문화유산찾기운동
 - 유물전시·활용, 유물도록 및 번역집·목록집 발간
 - 유물기증·기탁자 초청행사 개최 및 특별전 개최, 전시도록 발간

- 문화유산 교육 및 기획전시
 - 문화재 실무 체험교육
 - 고고학 체험교실
 - 생생문화재 사업
 -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역사체험 교실
 - 전통문화와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사회교육활동
 - 특별전 개최 기획 및 전시
 - 직원연구역량 강화
 - 전문강사 초빙교육
 - 학술세미나 개최
 - 현장답사
 - 전문교육 참가
 - 대외적 위상 정립
 -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및 관련학회 지원
 - 중요 발굴 현장 설명회 개최
 - 학술대회·발굴유물 특별전 개최
 -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
 - 시군 문화재 관계관 연찬회
 - 함께하는 문화유산 답사
 - 시민공개강좌
 -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지방사 자료 정리를 위한 문헌조사
 - 기타 지자체 위탁 문화재 관련사업
- 위탁사업의 구성
- 강원도가 추진하는 문화유산 관련 사업 내에서 행정기관인 강원도가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나,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사업의 위탁 추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 및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사업
- 수익성 창출 및 민관협력이 우선되는 사업
-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행정기관이 추진하기에 비효율적인 사업

● 위탁 사업의 예

-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개발 사업 추진 및 관리
- 도사 편찬 사업
- 향토의 얼 선양사업 및 향토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 사업
- 향교, 박물관 위탁 관리 사업
- 유적지, 천연기념물, 전적기념물, 충혼탑 위탁 관리 사업
- 전통사찰 유지보수 사업

● 위탁사업의 효과

- 강원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재)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칭)는 강원도의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강원도 문화유산 정책에 전문성을 부여하는 효과 기대

■ 독립법인으로서의 사업구성

- 독립된 문화유산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칭)의 주요한 사업은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체계 구축이 최종 목표임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설 문화재 조사기관과는 차별화 된 전략 속에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도 출연기관으로서만이 가능한 도 및 지자체 보조사업 및 기타 사업영역을 개발,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단순한 일반용역 수주보다는 도의 보조와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문화재 전문 조사기관인 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칭)만이 가능한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도민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를 대상으로 적합한 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소 내에 별도의 사업개발을 위한 부서를 추가적으로 편제해야 함

3. 핵심사업 추진 계획

3.1 문화재돌봄사업

■ 사업명

- 문화재돌봄사업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문화재에 대한 일상관리를 통하여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람환경 개선
- 경미한 문화재 훼손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복구하는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사후 보수정비 부담 경감
- 취약계층 인력의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 보완 효과

■ 추진방침

- 문화재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 연중 상시화
- 보수인력의 주기적 순환근무를 통한 적기 투입
- 주요 관리거점 확보로 신속한 관리 유지
- 소유·관리자 미거주 '나홀로 문화재' 우선·집중 관리

- 호우·산불 등 재난관리시기 집중 관리, 재해 예방
- 문화재청과의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대비
- 사업시행주체인 강원문화재연구소가 보유한 전문인력(고고학, 건축학, 보존과학) 활용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매년 지속사업)
- 소요예산 : 1,330백만원 [국비(기금) 665백만원, 지방비 665백만원]
 - 18년도~19년 향토유적 관리 DB구축 작성 : 150백만 원
 - 19년도 도면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발간 : 200백만 원
- 관리대상 문화재 : 지정문화재 등 471개소

[표 5-1] 돌봄사업 관리대상 문화재

(단위 : 건수)

계(A) (A=B+C+D+E)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문화재 (C)	시도지정문화재				
	소계 (B)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 연 기념물	국가민속 문화재		소계 (D)	유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471	99	4	46	16	9	20	4	35	231	84	54	3	90
비지정문화재													
소계 (D)	서원	향교	주거 가옥	루*정* 각	사찰	성곽	석물	사당	고인돌	진보돈	폐사지	보존 유적	기타
106	2	2	1	49	1	1	11	7	4	2	11	6	9

■ 기대효과

- 사전 예방적인 문화재 일상관리 시스템 강화로 문화재 훼손 예방 및 관람 환경 개선
- 자연재해(산불, 폭설 등) 예방기에 맞춘 집중관리로 문화재 훼손 위험요소 사전 차단
-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사업성과 배가
- 목조문화재 흰개미 모니터링 탐지 시스템 설치, 석조 문화재 세척을 통하여 문화재 관리 영역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문화재 주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조사, 열목어 서식지 수질

및 생태 환경 조사를 통하여 문화재 주변 자연 환경 보호

-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으로 문화재에 대한 친밀도와 보전의식 제고
- 지역 내 취약계층 등 인력 고용으로 문화재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문화재 돌봄사업 대상 문화재를 활용한 교육·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으로 문화재에 대한 친밀도와 보전의식 제고
- 전문성 있는 문화재 경미보수 및 일상관리로 중대한 훼손을 사전에 예방, 문화재 멸실 및 보수 정비 예산 절감

■ **향후 계획**

- 일상관리, 경미수리, 전문모니터링 등의 사업 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
- 문화재 돌봄사업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

3.2 내고장 향토유적(비지정문화재) 관리 DB 구축 사업

■ **사업명**

- 내고장 향토유적 (비지정문화재) 관리 DB구축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비지정문화재인 향토유적이 부실한 관리로 훼손·멸실 됨에 따라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역사적 가치조사 및 재조사를 위한 DB 구축이 필요
- 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한 예산은 ‘문화재 돌봄사업’이 유일
- 강원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522개소¹⁾ 중 문화재 돌봄사업이 관

1) 문화재청, 「2008년 비지정 건조물문화재 보고서」, 2008

리하는 비지정 건조물문화재는 59개소에 불과

- 도난과 멸실, 훼손에 노출

■ 추진방침

- 문화유산의 가치 확산으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치 재조명
- 합리적인 보존 및 관리방안 요구
- 문화유산 DB 구축의 기초자료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
- 소요예산 : 350백만 원(도비)
 - 18년도~19년 향토유적 관리 DB구축 작성 : 150백만 원
 - 19년도 도면 작성 및 보고서 작성 발간 : 200백만 원
- 관리대상 문화재 : 강원도 내 비지정문화재 59개소

■ 기대효과

- 국가의 문화유산을 체계적, 합리적 보존 및 관리방안 마련
- 비지정문화재의 가치 발굴
- 문화재 지정을 감안한 DB로 활용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 목록화
- 향후 국토개발, 도시개발, 지역개발 사업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 확립
- 강원 문화유산 활성화

■ 향후 계획

- 학술적·예술적 가치 인정 시 문화재 지정 추진 : 19년도 이후
- 강원도 문화재 아카이브 작성 및 DB 구축에 활용

3.3 박물관 소장문화유산 및 보존환경 관리

■ 사업명

- 박물관 소장문화유산 및 보존환경 관리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내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상태 및 보존환경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등 문화재 보존에 적극 대응
- 도내 박물관 보존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마련
- 보존처리가 필요한 여러 재질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보존과학 전문 인력 부재로 인한 보존관리의 어려움을 강원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팀에서 해결
-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보존처리를 통한 문화재 관리효율 극대화

■ 추진방안

- 기본원칙
 - 도내 박물관 소장 문화재 및 보존환경 관리 체계 마련
 - 문화재 재질별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제어를 위한 방안 연구
- 도내 박물관 소장문화재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추진(20개소)
 - 시군 공립박물관 수요조사 실시
- 관계전문가 문화재 보존상태 조사 및 기술지도 추진
 -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반 편성·운영
- 소장문화재의 재질에 따른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 소장문화재의 재질에 따른 온·습도 등 보관환경 주기적 점검
 - 유해생물 피해에 의한 문화재의 손상여부 주기적 점검
 - 소장문화재에 유해한 가스의 조사 및 환경제어를 통한 예방보존
 -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보존처리 후 관리체계 마련

-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지진대비 예방보존
- 박물관 옥외문화재의 풍화, 재해 등에 의한 손상 주기적 점검
- 박물관 옥외문화재의 변위 측정 등 주기적 점검

■ 사업개요

- 대상 : 도내 공립박물관 20개소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사업내용 : 박물관 소장문화재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 사업수행 : 문화재 보존처리 전문인력 보유기관(강원문화재연구소)

■ 추진계획

- 시군별 공립박물관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 '17. 10.~12월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지원사업 추진 : '18. 1.~12월
- 세부 추진일정 : 아래 [표 5-2]참조

■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내 박물관 소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보존 관리 효율성 기대
- 도내 박물관에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를 위임받고자 할 경우 협약을 통해 문화재보존시설 및 인력의 조건 충족
- 도내 박물관과의 상호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 제고
-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응급처리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치

[표 5-2] 박물관 소장문화유산 및 보존환경 관리사업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비 고
2017. 10.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공립박물관 현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공립박물관 시설현황 - 시군별 공립박물관 유물수량 및 재질 - 소장문화재의 손상 여부 - 응급보존처리 필요한 문화재 수량 - 소장문화재의 재질에 따른 온.습도, 조도, 유해가스 등 보존환경 관리 체계 - 유해 생물에 의한 손상여부 - 보존처리 완료된 소장문화재 파악 - 보존처리 완료 후 보관체계 파악 - 전시유물 지진대비 작업 현황 - 옥외 문화재 및 조각품 관리체계 	
2018. 1.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문화재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업무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박물관 선정 - 업무관련 인력 채용 -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업무 관련 장비 구입 -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업무 관련 소모품 구입 - 훼손된 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처리 계획 마련 - 응급 보존처리가 필요한 문화재 선별 후 보존관리 - 문화재의 재질에 따른 보존환경 관리 - 유해 생물에 의한 문화재 피해의 대응책 마련 - 옥외 문화재 및 조각품의 보존계획 마련 	
2018. 3.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문화재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대상박물관의 유물상태 관리 - 주기적인 방문을 통한 대상박물관의 보존환경 관리 - 소장문화재의 관리 및 보존처리 - 박물관 전시유물의 지진대비 작업 - 옥외문화재 변위측정 등 보존관리 작업 	
2018. 1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장문화재 보존처리 및 보존환경 관리 업무 보고서 작성 ○ 동절기 대상박물관 소장문화재 및 보존환경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물관 소장문화재 및 보존환경 제어 - 옥외문화재 등파 등 손상요인 제어 	
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된 문화재의 응급보존처리 ○ 장비 고장 등 수리 필요 시 현장자문 ○ 기획전시 시 보존과학적 관리 현장자문 ○ 리모델링 시 보존과학적 관리 현장자문 ○ 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현장자문 ○ 박물관 보존환경 및 소장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기술 지원 	

3.4 북강원도 문화재 및 고문헌 자료조사 학술연구용역

■ 목적 및 필요성

- 강원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의 분단과 동일한 성격의 세계 유일 분단 ‘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음
- 분단 ‘도’이며, 통일여건 조성의 중심 ‘도’로서 전통문화 교류를 통한 역사적 동질성 및 정체성 제고 필요
- 북강원도에 산재된 문화재 및 고문헌 자료조사를 통한 민족문화 동질성 회복의 기반 마련

■ 용역개요

- 용역명 : 북강원도 문화재 및 고문헌 자료조사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주요내용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조사
 - 사업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협의
 - 북한 민간교류단체 및 학술연구기관 선정
- 북강원도 소재 문화재 목록 작성
 - 지정문화재 종류별 목록 확인
 - 문화재 현황 조사 및 사진 자료 수집
 - 비지정문화재 및 발굴조사 자료 파악
- 고문헌 자료조사
 - 고문헌 내 북강원도 관련 자료 취합
 - 고지도 내 북강원도 관련 자료 취합
- 남·북강원도 소재 문화재 및 고문헌의 시대별 분류
 - 시대별 강원도 소재 문화재 분류 및 지역별 특징 분석
 - 지역별 특징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 고문헌 및 고지도에서 확인된 강원도 자료 집성
- 조사된 문화재의 분포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에 표시
- 타당성 검토
 - 고고학, 역사학, 민속학, 미술사, 향토사와 관련된 권위있는 전공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취합된 자료 검증으로 타당성 확보
 - 자문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보완
- 책자 발간 및 배포
 - 조사 성과가 수록된 보고서를 책자 및 CD로 제작
 -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배포
- 용역결과 활용방안(계획)
 - 강원도 중심의 통일여건 조성과 전통문화 동질성 확보를 위한 기틀 마련
 - 향후 지속적인 남북문화재 교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강원도 내 DMZ와 관련된 관광지에 홍보 자료로 활용
- 기대효과
 - 통일을 대비하여 문화재를 통한 남북간의 교류 및 협력 강화
 - 자문위원회를 통한 문화재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고증하여 강원도 문화유산의 정체성 및 우수성 입증
 - 북강원도 소재 문화재 자료 확보로 강원도 전지역의 시대별, 종류별 문화재 분포 범위 파악 가능
 - 북강원도의 고문헌 자료조사로 옛 도민들의 생활사 파악 가능
 - 남북간 공동체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기회 제공

■ 향후 추진계획

- 북한 민간교류단체·학술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 '18. 1 ~ 3월
- 북강원도 소재 문화재 및 고문헌자료 DB 조사 : '18. 4 ~ 11월
- 역사·학술·예술적 가치 고증 및 책자 발간 배포 : '18. 12월

4 조직 및 인력 구성

1. 조직구성

1.1 조직구성의 목적

- 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칭)는 강원도의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강원도와 협력 추진하며, 단순히 도의 위탁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도민이 실질적으로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임.
- 문화유산의 조사·연구·보존·관리·활용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조직 구성이 필요

1.2 조직구성의 방향

- 문화재 조사 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문화재 돌봄사업 및 정비계획을 마련하는 국비·도비 보조 사업을 펼치는 한편,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강원도 문화재연구소(가칭)의 경우 주변 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장기적인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부서의 기능이 필요
- 이에 따라 각각의 사업 성격과 유형에 맞게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단순히 사업비 및 보조금을 통해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다각적이고 네트워크화 된 문화유산 재창출이라는 비전을 추구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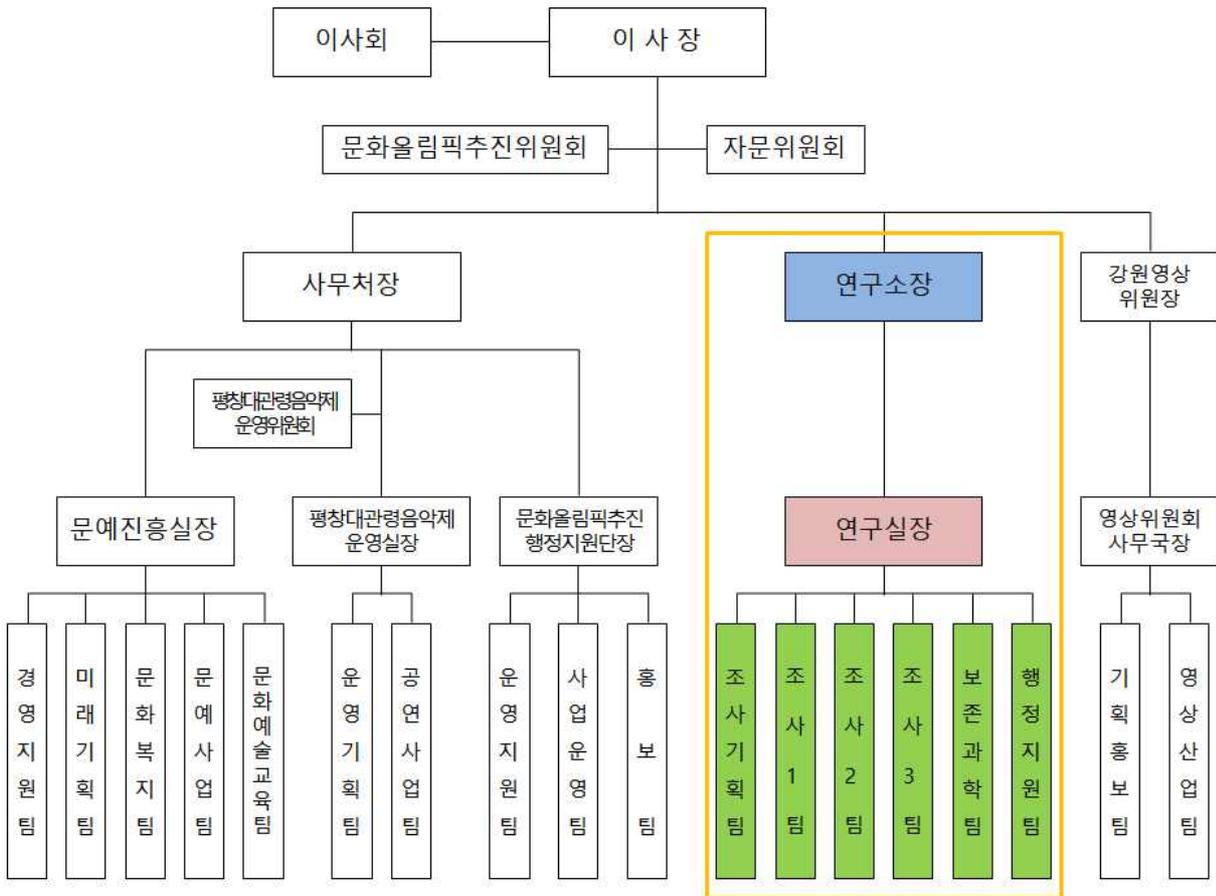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조직은 단기적으로는 작고 알차게, 중기적으로는 사업의 확대를 고려하여 점차 확대시키는 것으로 함.
 - 1단계(단기) : 설립 시부터 3년(2018년~2020년)
 - 2단계(중기) : 3년차 이후(2021년부터~)
- 조직은 전문성, 자율성, 책임성, 투명성, 개방성 등 5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함.

1.3 부서 구성

- 설립 초기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조직체계 승계(1실 6개팀)
- 성장단계에는 사업 영역 확대에 따른 조직 개편을 실시
- 조직의 운영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다각적인 사업에 따른 부서 추가

1.4 조직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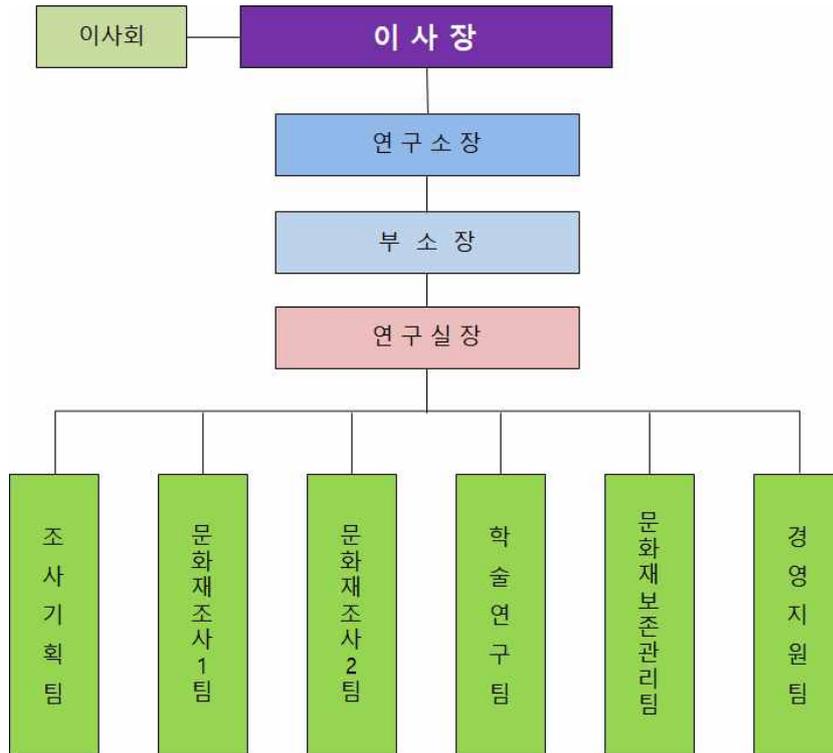
-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조직
 - 연구소장-연구실장-팀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실장 산하에 조사기획팀,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보존과학팀, 행정지원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5-2] 현 재단 부설 연구소의 조직도

■ (가칭)강원도문화연구소의 단기 조직구성(안)

- 이사장-연구소장-부소장-연구실장-팀장 체제로 구성하며, 연구실장 산하에 조사기획팀, 문화재 조사1팀, 문화재 조사2팀, 학술연구팀, 문화재보존관리팀, 경영지원팀 등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 재단 부설 연구소의 조직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소장과 연구실장 사이에 부소장직을 신설하고, 조사 3팀을 학술연구팀으로 변경한 것임.



[그림 5-3]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단기 조직구성(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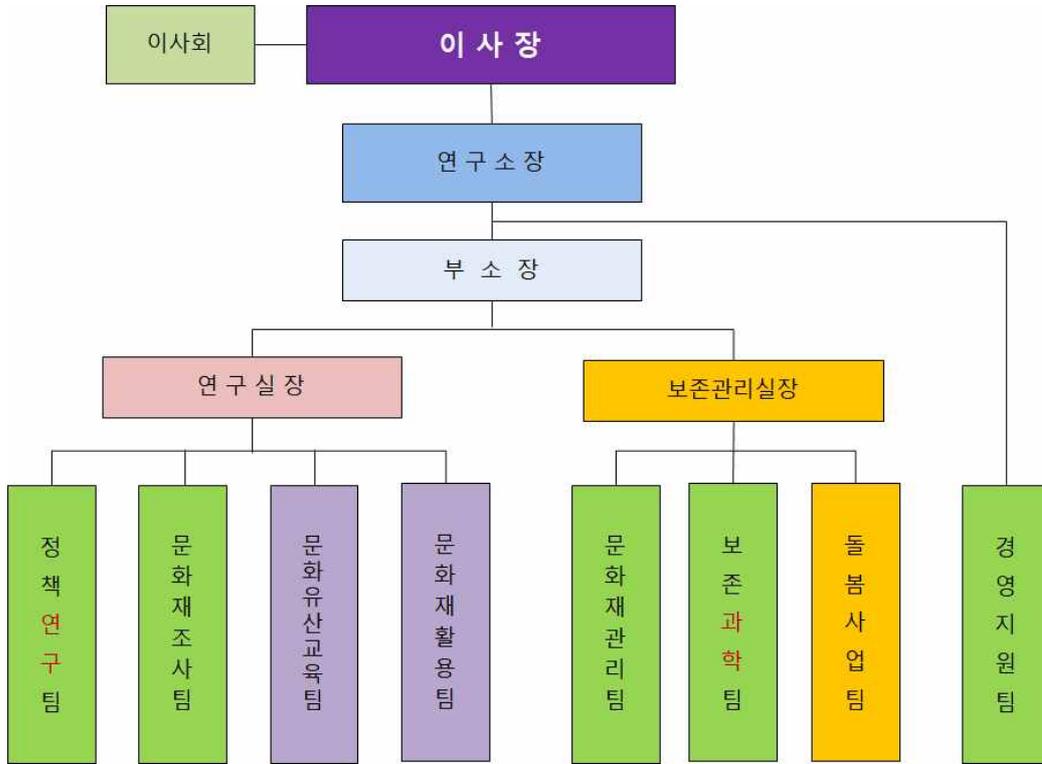
- 단기 조직의 팀별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3] 단기 조직의 팀별 업무분장 내역

팀	담당업무
조사기획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업무 관련 행정처리 ○ 문화재 조사 관련 민원 안내 ○ 조사팀 관련 각종 현황 및 일정 관리 ○ 학술대회 기획 및 개최 관련 업무 ○ 문화재청 및 한문협 관련 업무 ○ 연구소 홍보 관련 업무 ○ 보고서 발간 일정 관리 및 문화재청 제출
문화재 조사 1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조사 업무 및 보고서 발간업무 ○ 유물 국가귀속 업무 및 수장고 관리 ○ 유구도면 일러스트 작업 및 관리 ○ 유물 실측도구 및 전자지도 관리
문화재 조사 2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조사 업무 및 보고서 발간업무 ○ 현장장비 관리 및 점검 ○ 재물관리 및 문서관리 ○ 보고서 관련 자료정리
학술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 및 시군·읍면지 편찬, 디지털 향토문화전자대전 집필사업 ○ 강원도사 연구와 고증, 강원문화 콘텐츠 연구 및 개발 ○ 지역사 연구와 고증, 문화유산 조사, 문화정책 및 콘텐츠 연구 ○ 학술세미나 개최 및 강원학과 강원문화 발간
문화재보존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처리 계획 수립 및 시행 ○ 보존처리 업무 ○ 보존 관련 장비 구입 및 관리 ○ 문화재 돌봄 사업 업무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인사 및 조직, 복무 관리 ○ 감사 수감 및 감사자료 작성 ○ 연구소 각종 서무 관리 ○ 연구소 회계 관련 업무 ○ 각종 입찰 관련 업무 및 계약 관련 업무

■ (가칭)강원도문화연구소의 중기 조직구성(안)

- 이사장-연구소장-부소장-연구실장과 보존관리실장-팀장 체제로 구성하며, 연구실장 산하에 정책연구팀, 문화재조사팀, 문화유산교육팀, 문화재활용팀 등 4개 팀을 두고, 보존관리실장 산하에 문화재관리팀, 보존과학팀, 돌봄사업팀 등 3개 팀을 두며, 연구소장 산하에 경영지원팀을 두는 것으로 구성함.
- 단기 조직 구성(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존관리실장 직을 신설하고, 기존 6개 팀에서 8개 팀으로 두 팀이 늘어난 것임.



[그림 5-4]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중기 조직구성(안)

- 중기 조직의 팀별 업무분장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5-4] 중기 조직의 팀별 업무분장 내역

팀	담당업무
정책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 각종 정책 수립 및 기획, 콘텐츠 연구 ○ 조사 업무 관련 행정처리 및 관련 민원 안내 ○ 조사 관련 현황 및 일정 관리 ○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 ○ 강원도사 연구와 고증, 강원문화 콘텐츠 연구 및 개발 ○ 지역사 연구와 고증, 문화유산 조사 ○ 학술세미나 개최 및 강원학과 강원문화 연구
문화재 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발굴 및 지표조사 업무 ○ 조사 보고서 발간 업무 ○ 유물 국가귀속 업무 ○ 유물 관리 및 수장고 관리 업무
문화유산 교육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관련 교육 업무 ○ 전통문화와 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 사회교육 활동 ○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 및 시민공개강좌 ○ 시군 문화재 관계관 문화재 업무 연찬회
문화재 활용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생문화재 사업 및 고고학 체험교실 ○ 직장체험 프로그램 및 역사체험 교실 ○ 문화유산 현장답사 및 중요 발굴 현장 설명회 ○ 문화재 관광 인프라 소개
경영지원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인사 및 조직, 복무 관리 ○ 감사 수감 및 감사자료 작성 ○ 연구소 각종 서무 관리 ○ 연구소 회계 관련 업무 ○ 각종 입찰 관련 업무 및 계약 관련 업무
문화재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문화재 정기 및 긴급 조사 ○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문화재 관리 ○ 공공전시물 관리 ○ 기타 문화재 관련 보수 및 관리
보존과학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 출토 및 보관 유물 보존처리 및 연구 ○ 대학박물관 등 외부기관 의뢰 유물 보존처리 및 관리 ○ 도내 박물관 소장문화재 보존환경 관리 및 컨설팅 ○ 보존과학 관련 장비 구입 및 유지 관리
돌봄사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돌봄 사업 인사, 회계, 조직, 서무 등 관련업무 ○ 관리대상 문화재 일상관리, 경미보수 업무 ○ 관리대상 문화재 정기, 전문 모니터링 업무 ○ 문화재 돌봄 사업 보고서 작성 및 정산 ○ 문화재 돌봄 사업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관련업무

2. 인력구성

- 인력 구성의 기본 원칙
 - 연구소의 기본 업무인 매장문화재 조사에 필요한 인력 구성
 -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조사기관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고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문화재청 인력 기준에 합당한 연구직 인력 구성
 - 문화유산 보존 및 수리에 필요한 기능직 기술자를 인력으로 구성
 - 연구소 운영과 행정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일정한 경력과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으로 구성
 - 사업이 다각화되어 추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력을 추가 채용
 - 강원도 및 각 시군과 원활한 업무 협의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강원도 공무원 파견 필요
- 인력의 구분
 - 인력은 연구직, 행정직, 기술직(기능직 포함)으로 구분
 - 직급은 연구직의 경우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으로 구분, 행정직은 실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으로 구분
 - 보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연봉제로 계약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라 유연한 임금 책정
- 현 재단 부설 연구소의 정원은 34명(일반직 3, 연구직 31)이며, 현원은 21명(일반직 2, 연구직 19)임.

[표 5-5] 현 재단 부설 연구소의 정원 및 현원

구 분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일반직	3	-	-	-	1	1	1	
	연구직	31	1	2	4	4	8	6	6
	계	34	1	2	4	5	9	7	6
현원	일반직	2	-	-	-	-	-	1	1
	연구직	19	-	1	3	2	10	2	1
	계	21	-	1	3	2	10	3	2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단기 정원(안)은 부소장 직을 신설함에 따라 1명이 증가하고, 직급 정원을 조정함.

[표 5-6]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단기 정원 조정(안)

구 분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현 정원	일반직	3	-	-	-	1	1	1	-	
	연구직	31	1	2	4	4	8	6	6	
	계	34	1	2	4	5	9	7	6	
단기 조정(안)	일반직	3	-	-	-	1	1	1	1	-
	연구직	32	1	1	1	5	5	6	6	7
	계	35	1	1	1	6	5	7	7	7
변동(증, 감)		증1		감1	감3	증1	감4		증1	증7

주) 1급 : 소장, 2급 : 부소장, 3급 : 실장, 4급 : 팀장, 5급 이하 : 팀원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중기 정원(안)은 보존관리실과 2개의 팀이 신설됨에 따라 단기 정원(안)보다 15명이 증가됨.

[표 5-7]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중기 정원 조정(안)

구 분			직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단기 정원(안)	일반직	3	-	-	-	1	1	1	1	-
	연구직	32	1	1	1	5	5	6	6	7
	계	35	1	1	1	6	5	7	7	7
장기 조정(안)	일반직	4	-	-	-	1	1	1	1	-
	연구직	46	1	1	2	7	8	8	9	10
	계	50	1	1	2	8	9	9	10	10
변동(증, 감)		증15			증1	증2	증4	증2	증3	증3

주) 1급 : 소장, 2급 : 부소장, 3급 : 실장, 4급 : 팀장, 5급 이하 : 팀원

5. **재원조달방안**

1. **필요 재원의 추정**

- 최근 5년간 지출 예산을 통한 필요 재원의 추정(문화재돌봄사업 예산 제외)
 - 최근 5년간(2012~2016) 연구소 지출 예산 현황을 보면, 최저 1,848백만원 ~ 최고 3,148백만원으로 평균 2,590백만원의 규모임
 - 문화재 발굴조사 등 사업비는 최저 580백만원 ~ 최고 1,459백만원으로 평균 1,101백만원 규모임
 - 직원 급여,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인건비)는 최저 1,079백만원 ~ 최고 1,267백만원으로 평균 1,137백만원 규모임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는 최저 189백만원 ~ 최고 564백만원으로 평균 351백만원 규모임
- 설립 초기, 사업비를 제외한 직원 급여 등 인건비 11~12억, 운영경비 3.5~3.6억원은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함
- 향후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여 확장할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재원조달계획**

-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발굴 경비 징수(매장문화재 발굴용역 수주)
 - 발굴 수주를 통한 재원 중 지출 경비를 제외하고, 연구소 재정으로 흡수되는 금액(인건비, 제경비, 학술료)은 최근 5년간 533백만원, 최고 2,403백만원으로 평균 1,227백만원 규모임

- ⇒ 연간 직원 인건비(11~12억)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임
- 문화재청 법인 설립 허가로 전국 단위 조사가 가능해지면, 용역 수주를 통한 재원이 확충될 수 있으나, 운영상의 경비 충당이 해결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독립 법인 설립 초기, 도 출연 문화재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앞서 살펴 본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도의 재정적 지원 방안
 - (출연금) 타 시도 출연 독립법인의 재정 지원 사례에 따라 법인 설립 출연금(설립 기본재산)의 적정규모는 5천만 원으로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인건비) 재단의 특성상 인건비 중 일부(30~40%)를 출연금 형태로 재단의 재정적 자립기반이 확보될 때까지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간 5억 원 정도씩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운영비) 설립 초기 1억 지원 후, 1년 단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5-8] 도의 재정지원 방안(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650	650	500	500	500	500
설립기본재산	50	50	-	-	-	-
인건비	2,500	500	500	500	500	500
운영비	100	100	-	-	-	-

- 위탁 사업 등 사업 보조금 지원
 - 학술 발굴, 문화재 활용 사업, 유물 보존처리, 중요 유구 보존대책, 각종 연구 용역 등은 사업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로 조달 가능
- 도 출연(인건비 일부 지원) 계획에 따른 효과
 -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로 문화재 발굴조사 이외에 연구, 보존, 관리, 활용, 교육 등 사업영역 다각화 및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수익의 공익사업 지원 및 투자로 선순환 구조 창출
-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용역수수 증가로 빠른 시일 내에 재정 자립 가능
- 예측 불가능한 용역 수주의 연도별 편차에 따른 수지 불균형 해소

● 또한,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소가 사용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에 따른 행정절차가 동반될 필요가 있음.

- 위치 : 춘천시 우두하리길 33(우두동 296-3)
- 토지 및 건물 현황 : 대지 2,539㎡, 건물 연면적 1,104㎡

[표 5-9] 현 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사무공간

구분	구분	건립연도	연면적	층수	구조	용도	소유권	비고
본관	주	1982 (1989 2층)	517.5㎡	2층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	사무실 (연구실장실 행정지원팀 조사기획팀 보존과학팀)	강원도	
	부	1985	60㎡	1층	시멘트블록조 슬라브	소각장, 서고	강원도	-보일러실, 창고
신관		2017	526.5㎡	1,2층 (일부 복층)	철골조	사무실 (조사 1, 2팀) 유물정리 복원실 수장고	강원도	재단부설 강원문화 재연구소 기부채납

주) 2010년 7월부터 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설관리 하는 조건으로 무상이용 중, 2017년 조사팀 사무실 및 수장고 신축(증축)

⑥ 설립 타당성 분석

1. 비용·편익 분석

1.1 분석의 개요

■ 분석의 전제

- 설립타당성 분석은 크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재무적 타당성 분석’(Financial Analysis)이란, 사회 전체의 입장이 아닌 개별사업 자체 내의 입장에서 실제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따른 재무적 수익성을 계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임.
- ‘경제적 타당성 분석’(Economic Analysis)이란,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고, 이에 따라 경제적 수익률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임.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은 공익성이 매우 높은 바, 경제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국가 전체적(사회적) 입장에서 측정하기가 어렵고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본 과업에서는 재무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함.
- 이에, 편익·비용비율(B/C Ratio),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 세 가지의 분석방법을 통하여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할인율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2016.4)이 권고하고 있는 할인율(최근 3개년 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값 3.5%)을 적용함.

■ 분석의 방법
● 편익·비용비율(Benefit-Cost Ratio : B/C Ratio)

●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 편익의 현재가치총액을 총비용의 현재가치총액으로 나눈 값 의미

● 편익·비용비율(B/C Ratio)이란, 장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석기간 중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총액을 비용의 현재가치총액으로 나누어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임.

● B/C Ratio가 1보다 클 경우,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text{편익/비용비율 (B/C Ratio)} = \frac{\sum_{t=0}^n \frac{B_t}{(1+r)^t}}{\sum_{t=0}^n \frac{C_t}{(1+r)^t}}$$

B_t : t 시점의 편익, C_t : t 시점의 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 NPV)

● 순현재가치(NPV)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편익의 현재에서 총비용의 현재를 차감한 값을 의미함

● 순현재가치(NPV)란 사업에 수반된 모든 비용과 편익을 할인율을 활용하여 기준연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고, 총편익의 현재가치총액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총액을 차감한 값을 의미함.

● NPV가 0보다 클 경우,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text{순현재가치 (NPV)}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B_t : t 시점의 편익, C_t : t 시점의 비용, r : 할인율, n : 분석기간

●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 IRR)

- 내부수익률(IRR)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총 편익의 현재가치총액과 총 비용의 현재가치 총액이 같아지는 할인율 의미

- 내부수익률(IRR)이란, 편익과 비용의 현재가치로 환산된 값이 같아지는 할인율(R)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업시행으로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계수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임.
- 내부수익률(IRR)이 분석시점의 할인율(r)보다 클 경우, 그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text{내부수익률 (IRR)} : \sum_{t=0}^n \frac{B_t}{(1+R)^t} = \sum_{t=0}^n \frac{C_t}{(1+R)^t}$$

B_t : t시점의 편익, C_t : t시점의 비용, R : 내부수익률, n : 분석기간

● 분석 방법 비교

- 편익·비용비율(B/C Ratio)은 투·융자심사기준 등 주요 사업 평가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특정 항목을 편익 혹은 비용으로 처리하는가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음.
- 순현재가치(NPV)는 순편익의 흐름을 사업 개시연도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만, 사업규모에 대하여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간 비교에는 적당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내부수익률(IRR)은 사업의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으나, 수익의 발생구조에 따라 계산되지 않는 단점이 있음.

[표 5-10] 설립타당성 분석기법의 비교

구분	타당여부	장점	단점
편익/비용비율 (B/C Ratio)	$B/C \text{ Ratio} > 1$	· 이해하기 쉬움 · 사업규모 고려 가능	· 상호배타적 대안 선택의 오류 발생 가능
순현재가치 (NPV)	$NPV > 0$	· 대안 선택 시 명확한 기준 제시 · 장래발생편익의 현재가치 제시 · 한계 순현재가치 고려 · 타 분석에 이용 가능	· 이해의 어려움 · 대안 우선순위 결정 시 오류 발생 가능 · 시장잠재력과 같은 비재무적 자료 미고려
내부수익률 (IRR)	$IRR > r$	· 사업의 수익성 측정 가능 · 타 대안과 비교가 용이 · 평가 과정과 결과 이해가 용이	· 사업의 절대적 규모 미고려 · 몇 개의 내부수익률이 동시에 도출될 가능성 내재

자료 :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 연구(5판), 2008

1.2 편익의 추정

- 현 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최근 4년 동안(2012년~2016년, 2015년도는 수입금액이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함)의 평균수입 3,489백만 원 $[(3,405+3,775+3,299+3,476)/4]$ 을 기준으로 함.

[표 5-11] 최근 5년간 수입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입	3,405	3,775	3,299	1,940	3,476

주) 백만원 미만 반올림

자료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 내부자료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전국단위의 조사가 가능하여 2018년부터 용역수주를 통한 수입이 연간 2.5%씩 정도 성장한다고 가정함.

[표 5-12] 편익의 추정

(단위 : 백만원)

기준금액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3,489	2,722	3,702	3,776	3,852	3,929	4,007	4,088	4,169	4,253	4,338

 주) 백만원 미만 반올림. 2018년은 9개월 분 추정치 $[(3,489 \times (1.02)^2 \times 9/12)]$

1.3 비용의 추정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로 구분되며, 최근 5년 동안(2012년~2016년) 현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사업비, 경비 및 기본경비의 지출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5-13] 최근 5년간 지출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평균
사업비	1,062	1,324	1,081	580	1,459	1,232
인건비	1,123	1,267	1,094	1,079	1,125	1,252
기본경비	356	353	295	189	564	392
계	2,541	2,944	2,470	1,848	3,148	

주) 평균값은 2015년을 제외한 4년 동안의 평균값을 의미하고, 제외한 이유는 2015년의 지출규모가 다른 연도에 비해 매우 적어 평균값을 희석시키기 때문임.

자료 :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 내부자료

■ 사업비 추정

- 사업비는 과거 4년 동안의 평균 사업비 1,232백만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여 추정함.

[표 5-14] 사업비의 추정

(단위 : 백만원)

기준금액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232	947	1,278	1,294	1,310	1,326	1,342	1,359	1,376	1,393	1,410

주) 백만원 미만 반올림. 2018년은 9개월 분 추정치[=3,489×(1.02)²×9/12]

■ 인건비 추정

- 인건비는 다른 비목과 달리 특성상 인력수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정원조정(안)에 따른 인력수를 근거로 추정해야 함.
- 따라서 인건비는 앞에서 제시된 단기(2018년~2020년)와 장기

(2021년~2027년)의 인력구성(안)에 제시된 직급별 인원수에 현 강원문화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른 직급별 연봉 한계표상의 상한액을 적용하되, 과거 5년 동안의 평균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여 추정함. 다만, 연구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음.

- 강원문화재단의 보수규정에 나타난 직급별 연봉(상한액)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한 연도별 직급별 연봉을 추정하면, [표 5-15]와 같음

[표 5-15] 연도별 직급별 연봉

(단위 : 천원)

직급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	81,329	82,337	83,358	84,392	85,439	86,498	87,571	88,656	89,756	90,869	91,996	93,136
2	72,621	73,522	74,433	75,356	76,291	77,237	78,194	79,164	80,146	81,139	82,145	83,164
3	63,913	64,706	65,508	66,320	67,143	67,975	68,818	69,671	70,535	71,410	72,295	73,192
4	55,835	56,527	57,228	57,938	58,656	59,384	60,120	60,866	61,620	62,384	63,158	63,941
5	48,226	48,824	49,429	50,042	50,663	51,291	51,927	52,571	53,223	53,883	54,551	55,227
6	42,310	42,835	43,366	43,904	44,448	44,999	45,557	46,122	46,694	47,273	47,859	48,453
7	37,252	37,714	38,182	38,655	39,134	39,620	40,111	40,608	41,112	41,622	42,138	42,660
8	32,194	32,593	32,997	33,407	33,821	34,240	34,665	35,095	35,530	35,970	36,416	36,868

주) 2017년 이후는 연평균물가상승률 1.24%가 반영된 수치이고, 1급과 8급은 추정치임.

- 위의 [표 5-15]를 기초로 단기(2018년~2020년)와 중기(2021년~2027년)의 인력 조정(안)에 나타난 직급별 인력에 따른 인건비를 추정하면 [표 5-16]과 같음.

[표 5-16] 연도별 인건비 추정

(단위 : 천원)

직급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1	83,358	84,392	85,439	86,498	87,571	88,656	89,756	90,869	91,996	93,136
2	74,433	75,356	76,291	77,237	78,194	79,164	80,146	81,139	82,145	83,164
3	65,508	66,320	134,285	135,950	137,636	139,343	141,071	142,820	144,591	146,384
4	343,370	347,628	351,938	475,070	480,960	486,924	492,962	499,075	505,263	511,529
5	247,147	250,212	253,314	461,620	467,344	473,139	479,006	484,946	490,959	497,047
6	303,561	307,325	311,136	404,992	410,014	415,098	420,245	425,456	430,732	436,073
7	267,271	270,585	273,940	396,196	401,109	406,083	411,118	416,216	421,377	426,602
8	230,982	233,846	236,745	342,401	346,647	350,946	355,297	359,703	364,163	368,679
계	1,615,629	1,635,663	1,723,088	2,379,964	2,409,475	2,439,353	2,469,601	2,500,224	2,531,226	2,562,614

■ 기본경비 추정

- 기본경비는 과거 4년 동안의 평균 기본경비 392백만원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의 평균물가상승률 1.24%를 반영하여 추정함.

[표 5-17] 기본경비의 추정

(단위 : 백만원)

기준금액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392	301	407	412	417	422	427	433	438	443	449

주) 백만원 미만 반올림. 2018년은 9개월 분 추정치[=3,489×(1.02)²×9/12]

■ 비용의 추정 결과

- 사업비,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각 비목의 추정근거에 따라 추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5-18]과 같음.

[표 5-18]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비용 추정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
2018	2,460	947	1,212	301
2019	3,321	1,278	1,636	407
2020	3,429	1,294	1,723	412
2021	4,107	1,310	2,380	417
2022	4,157	1,326	2,409	422
2023	4,208	1,342	2,439	427
2024	4,262	1,359	2,470	433
2025	4,314	1,376	2,500	438
2026	4,367	1,393	2,531	443
2027	4,422	1,410	2,563	449

주) 2018년은 9개월 분

1.4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

- 비용·편익 분석 결과, 향후 10년 동안 순현재가치(NPV)의 합계는 1,026백만원, 비용·편익 비율(B/C ratio)는 1.0310으로 나타나,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5-19] 비용-편익 분석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편익	비용	현재가치 : 3.5% 적용		
			편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순현재가치(NPV)
2018	2,749	2,460	2,749	2,460	289
2019	3,757	3,321	3,630	3,209	421
2020	3,851	3,429	3,595	3,201	394
2021	3,947	4,107	3,560	3,704	-144
2022	4,046	4,157	3,526	3,623	-97
2023	4,147	4,208	3,492	3,543	-51
2024	4,251	4,262	3,458	3,467	-9
2025	4,357	4,314	3,425	3,391	34
2026	4,466	4,367	3,392	3,316	75
2027	4,578	4,422	3,359	3,245	114
합계	40,149	39,047	34,185	33,158	1,026

2. 설립 대안별 비교

- 현재의 재단 부설연구소 형태
 - 오랜 기관운영 경력(16년)과 도 출연 재단으로 최상위 신용등급 보유로 용역 적격심사에 유리한 반면, 활동지역에 제한(강원도 지역 한정)으로 타 지역 용역 수주가 불가하고, 부설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이 미흡하며, 예측 불가능한 수입구조와 더불어 법인세법상 재단과 분리된 독립기업회계로 운영되어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불가능함.

- 공사·공단 형태로 설립할 경우
 - 공공성이 강하고 책임성 확보가 용이하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비효율, 전문성 및 창의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문화재관련 연구기관의 경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는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 있음.

- 민간위탁의 경우
 - 독점의 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이는 위탁을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그리고 지자체의 책임성 저하 등을 가져올 수 있음. 문화재관련 연구기관은 공공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민간위탁은 이에 대한 한계를 가질 수 있음.

- 자치단체가 출연한 공익법인 형태
 -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 공공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재를 자유롭게 영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위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함.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의 방식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타 시·도의 문화재연구기관 설립 사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성격의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이 이루어졌음(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

- 검토 의견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현재의 재단 부설연구소 형태, 공사·공단 형태, 민간위탁 방식, 강원도가 출연한 공익법인 형태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도의 설립 출연금을 자산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성격의 재단법인 형태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7 설립에 따른 영향 분석

1.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1 분석개요 및 방법

■ 분석개요

- 강원지역의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기초로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수치로 제시함.

- (가칭)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의 설립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은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에 기초하여 추정함.
- 지역산업연관표는 일정기간 동안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진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처분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행렬(matrix) 형식으로 기록한 통계표로 해당지역 산업·교역·고용의 구조 파악(지역간·산업간 상호연관관계) 및 지역단위의 경제·산업분석, 주요 경제정책의 파급효과 추정 등에 매우 유용한 분석틀로 활용이 가능함.
- (가칭)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적용계수(2013년)를 기초로 계량화하여 수치로 제시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적용계수 기준

구분	내용
생산유발계수	·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서 자გი지역 및 타 지역의 생산이 어느 정도 유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별 최종수요액과 자기지역 및 타지역의 생산유발액을 이용하여 산출된 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 특정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에 의해서 자기지역 및 타 지역의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 유발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계수
취업유발계수	· 최종수요 한 단위(10억원 기준) 발생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

자료 :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

■ 분석방법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지출되는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를 기초로 강원지역의 2013년 산업별 적용계수(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 계수)를 활용하여 추정함.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 참조)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데 따른 운영비(사업비, 인건비, 기본경비)를 강원지역의 2013년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계수(생산유발계수·부가가치유발계수·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여 추정함.
- 생산유발계수와 부가가치유발계수는 각 산업부문에 대한 단순평균 수치로 강원지역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로 인해 지역 내에서 유발된 계수와 타 지역에서 유발되는 단위로 나누어 추정함.
- 취업유발계수는 강원지역의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해당 산업과 기타 연관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에 따라 추정함.

▼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정 적용계수(강원지역)

구분	유발계수	비고
생산유발계수	1.874	
부가가치유발계수	0.894	
취업유발계수	29.70	(명/10억원)

자료 : 2010년 및 2013년 지역산업연관표, 한국은행, 2015

1.2 파급효과 분석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음.

[표 5-20]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유발계수	운영비	효과	비고
생산유발효과	1.874	39,047	73,174	
부가가치유발효과	0.894	39,047	34,908	
취업유발효과	29.70	39,047	1,160명	10억 당

주) 유발계수 : 강원지역의 2013년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계수, 10년 기준

2. 강원도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강원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0.02%로 나타남.

-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의 재원조달의 주된 방식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에 따른 발굴 경비를 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매장문화재 발굴용역 수주를 통해 재원 중 지출 경비(사업비, 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연구소 재정으로 흡수되는 금액(인건비,

제경비, 학술료)은 최근 5년간 533백만 원, 최고 2,403백만 원으로 평균 1,227백만 원 규모임.

-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어 문화재청 법인 설립 허가로 전국 단위 조사 가능해지면, 용역 수주를 통한 재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자립기반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도의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강원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의 2018년부터~2021년까지의 평균 지출계획은 209,834백만 원으로 출자 기본재산 5천만 원을 제외한 연간 인건비 지원(5억 원)이 미치는 영향은 0.02%로 강원도의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3.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감은 주민설문 조사 결과 전체 설문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5%(179명)가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5]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4. 관련기관과의 유사중복 여부

- 기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음.

5. 공무원 감축 효과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은 공공기관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강원문화재단의 부설연구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공무원의 감축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중기 조직구성(안)처럼 연구소의 기능이 확대되어 도의 관련 사업을 연구소가 수행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공무원의 인력이 감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인력감축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움.

제VI장

종합결론

- 1 종합의견
- 2 연구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제조건
- 3 정책제언

제VI장 종합결론

① 종합의견

1. 독립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종합의견 : (가칭)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은 타당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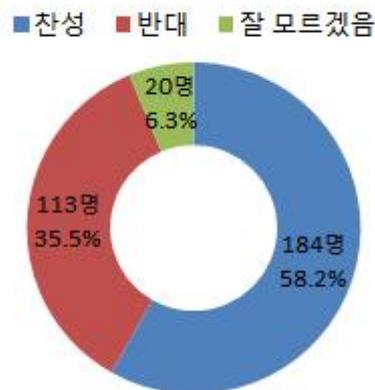
- (가칭)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여건분석 측면의 필요성 검토 결과
 - 경영환경 분석 결과, 현재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단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첫째, 조사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 필요, 도·시·군의 학술발굴조사의 정책적인 수주 지원 필요
 - 둘째, 종사자 교육을 통한 돌봄사업 활동 내실화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특성화와 차별화의 지속 추진
 - 셋째, 지자체 조사 수주 유도 및 돌봄 사업과 연계한 문화재 활용 콘텐츠 개발
 - 넷째,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할 자금조달 방안 마련과 경상 경비 절감 노력 필요
 - 다섯째, 사업 품질 고도화를 위한 연구원 전문성 제고 시책 추진
 - 관련법규 검토 결과, 문화재 관련 사업은 주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인 동시에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이 예상되는 바, 주무관청(출연기관-강원도)의 허가를 받고 강원도는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영환경 분석과 관련법규 검토 결과, 현 강원문화재단 부설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독립하여 (가칭)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사례 및 설문조사 측면의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

- 지역 문화재의 보호·보존 및 조사·연구, 지역 문화재의 보존, 처리 및 수장전시, 지역 문화재의 활용 및 보급 등을 위해 타 시·도가 설립한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등임.
 - 이들 연구원은 지자체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지역문화재의 조사·연구와 보존·보호 계획 수립, 학술연구와 도(시)민 강좌를 통해 문화재 가치를 선양하고 도(시)민이 향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하는 것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과반수(58.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6-1]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출연기관 설립 찬반 의견

■ 주민복리 측면의 설립 필요성 검토 결과

- 지역 문화재는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자원으로서 지역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로서, 지역 문화재를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은 지역성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즉, 문화재의 공급자인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는 문화재의 공개 및 관광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장료 등의 직접적 수입과 음식, 숙박, 쇼핑을 통한 간접적 수입 확보로 주민과 지역, 나아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의 열악함은 지역 내에 문화재 활용과 관련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원인임.
- 지역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있어서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재 활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배정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지역의 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재청의 본청(정책)-지방청(집행)의 분리 방안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재 연구원 또는 문화재 보호재단이나 문화재 관리 공단 등을 설립하자는 내용임.

■ 비용·편익 분석에 의한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비용·편익 분석 결과, 향후 10년 동안 순현재가치(NPV)의 합계는 1,026백만원, 비용-편익 비율(B/C ratio)는 1.0310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연관분석에 의해 생산유발효

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10년 동안 운영함을 전제로 할 때 생산유발효과 73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349억, 취업유발효과 1,160명으로 나타남.

■ 주민복지 측면의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데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대감은 주민설문 조사 결과 전체 설문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6.5%(179명)가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2. 독립 출연기관 설립의 적정성

- 현재 강원문화재단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강원문화재연구소를 독립된 도의 출연기관 형태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강원도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활용사업은 현재 지자체의 행정인력 담당자가 계획하거나 외부 사설 업체를 통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둘째, 도민의 문화 수준이 향상되어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지자체의 행정인력 담당자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의 문화향유권 요구 수준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셋째,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강원도 문화유산의 보존·보호 및 관리 기능을 대신하고 매장문화재 발굴과 더불어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 넷째, 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미설립 시

강원문화재단 부설 연구소로 기존 운영 방식을 유지할 수 있으나, 강원도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의 부설 연구소는 관련법상 도내 문화재 발굴에만 참여 가능한 구조로 전국 단위의 발굴 조사에 참여가 불가능하고, 타 지역 발굴조사기관의 도내 문화재 발굴 시장 잠식 등 용역 수주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다섯째, 도 출연 독립법인으로 전환하여 불안정한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단순 발굴조사 용역 기관의 한계를 벗어나 강원도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문화재 분야 총괄 학술연구기관으로 연구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미 설립시도의 재정적 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3. 문화재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

- 과거 5년(2012년~2016년) 동안 강원도의 문화재 관련 사업의 예산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표 6-1]과 같이 2012년 35,224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43,437백만원에 이룸.

[표 6-1] 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사업 수(개)	예산 현황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12	25(국 12, 도 13)	35,224	13,508	9,590	11,525	601	
2013	25(국 14, 도 11)	34,592	14,199	9,297	10,473	623	
2014	24(국 15, 도 9)	36,495	14,650	9,509	11,757	579	
2015	24(국 15, 도 9)	41,691	17,918	10,717	12,271	785	
2016	27(국 19, 도 8)	43,437	19,428	11,024	12,255	730	

- 과거 5년(2012년~2016년) 동안 강원도의 문화재 수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표 6-2]와 같이 2012년 571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634개에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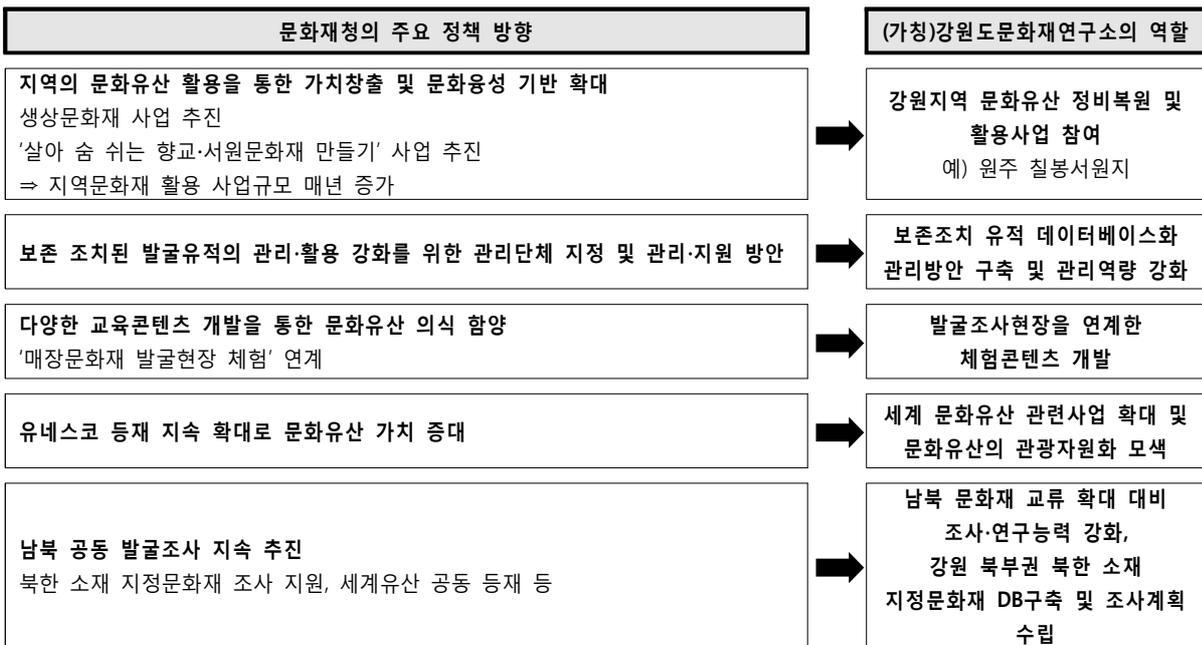
[표 6-2] 강원도 문화재 수 변동 추이

(단위 : 개)

구 분	합 계	국가지정문화재	강원도지정문화재	강원도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2012	571	154	257	125	35
2013	587	165	258	129	35
2014	614	181	263	135	35
2015	619	182	263	138	36
2016	634	188	266	142	37

-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방향에 따라 [표 6-3]과 같이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표 6-3]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방향과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역할



- 위와 같이 강원도의 문화재 관련 사업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 문화재 수의 증가 그리고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방향에 따라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할 문화재 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

4. 독립 출연기관 설립에 따른 기대효과

- 문화재연구소로서의 기능과 역할 강화
 - 현 강원문화재단에서 독립된 도의 출연기관으로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기대되는 것은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방향에 부응하고 및 도의 문화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문화재연구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
 - 기존 관 중심행정체제로는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나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한 공공목적 달성에 유리함
 - 강원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측면에서 매장문화제 발굴과 더불어 문화재 활용 등 문화재 학술연구 전문기관의 공익적 역할 수행

- 문화재 관련 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
 - 전문 인력을 활용한 각종 체험교실 및 시민강화, 현장답사 실시로 지역 주민의 역사·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강원도민의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고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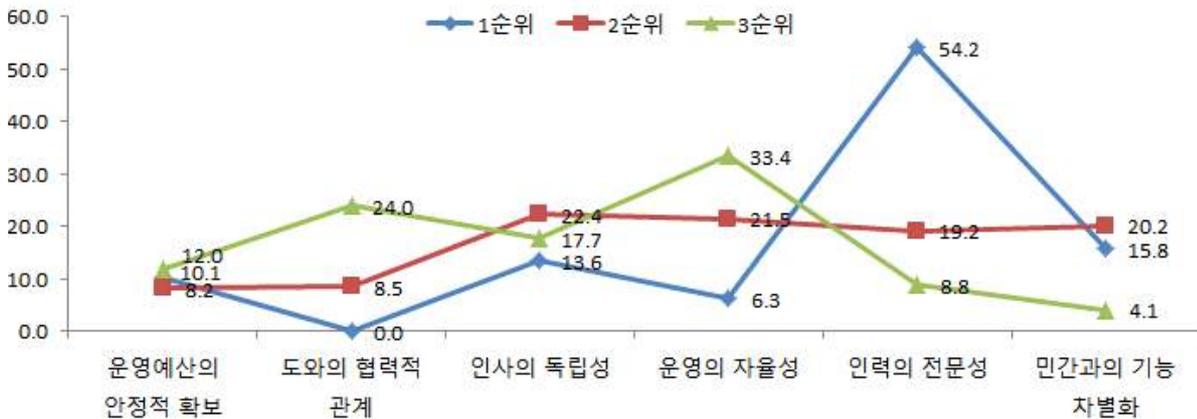
-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도내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교육 및 각종 콘텐츠 개발로 타 지역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다양한 콘텐츠 소비와 연결된 기념품, 숙박, 요식업 등 지역 내 소비지출의 증대 효과

■ 기타 부수적인 효과

- 안정적인 수입구조 및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신규 인력 진입
 - 연구원 신분 안정과 지역 인력 채용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 발굴 수요 증가로 대응할 수 있는 신진 인력 취업
- 도내 문화재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사회교육활동을 통한 문화재 관리 전문 인력 양성

2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전제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할 경우,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전문성, 인사의 독립성 및 운영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됨.



[그림 6-2] 연구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

3 정책제언

- (가칭)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도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따른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강원도의 문화재 관련부처와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함
- 둘째, 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도의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강원도의 문화재 관련 사업을 함에 있어 연구소를 주축으로 민·관·학의 네트워크가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마지막으로,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운영의 전문성과 재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함.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정보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7, 1005(비산동, 안양건설타워) TEL: 070-8650-8788 / FAX: 031-476-8300

	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응답자 ID				
---	-------------------------------------	--------	--	--	--	--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는 강원도 문화유산의 직접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고 문화재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문화재 관련 사회교육 활동을 통한 주민복지증진과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강원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는 현 강원문화재단연구소를 별도의 연구소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는 본 연구원에 의뢰하여 『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강원도의 출연기관인 강원도문화재단연구소를 설립과 관련하여 강원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사이며, 귀하의 응답내용은 용역에만 활용되고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10월

I.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생각하신 바와 같은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QA1. 귀하는 강원도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음 ② 중요하지 않음 ③ 보통 ④ 중요함 ⑤ 매우 중요함

QA2. 지금까지 강원도는 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귀하는 강원도의 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QA3. 다른 도나 광역시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귀하는 현재 강원도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못하고 있음 ② 못하고 있음 ③ 보통 ④ 잘하고 있음 ⑤ 매우 잘하고 있음

QA4. 귀하는 강원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위해 다음 예시된 것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3개를 체크하세요)

- 1순위() 2순위 () 3순위 ()

- ① 지속적인 예산 지원 ②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 ③ 문화재 전문인력 확보
- ④ 독립된 전문기관 설립·운영 ⑤ 민·관·학의 협력체계 구축 ⑥ 문화재에 대한 인식제고

II.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설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QB1. 귀하는 강원도 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립된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불필요함 ② 불필요함 ③ 보통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QB2. 강원도는 문화재의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귀하는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① 찬성() ② 반대() ③ 잘 모르겠다()

QB3. 귀하께서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에 찬성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문화재관련 업무의 전문성 확보
- ②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 ③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익적 사업 추진 가능
- ④ 문화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QB4. 귀하께서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의 설립에 반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 강원문화재단의 부설기관으로 충분
- ② 도의 예산낭비
- ③ 도의 문화재관련 업무 중복 초래 가능
- ④ 민간문화재연구기관과의 갈등 초래

QB5.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도문화재연구소가 설립될 경우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귀하는 다음 중 어떤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순위 3개를 체크하세요)

1순위() 2순위 () 3순위 ()

- ① 운영예산의 안정적 확보 ② 도와의 협력적 관계 ③ 인사의 독립성
- ④ 운영의 자율성 ⑤ 인력의 전문성 ⑥ 민간과의 기능 차별화
- ⑤ 기타 ()

QB6. 강원도의 출연기관으로 강원문화재단연구소가 설립되어 강원도문화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굴·보존·관리 및 활용이 이루어질 경우 귀하는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관계없음 ② 관계없음 ③ 보통 ④ 이바지함 ⑤ 크게 이바지함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QC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QC2. 귀하의 올해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QC3. 귀하의 결혼여부는? ① 결혼 ② 미혼

QC4. 귀하의 현재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영업 ② 사무/기술직 ③ 전문/자유직 ④ 판매/서비스직 ⑤ 공무원
⑥ 교직 ⑦ 학생 ⑧ 주부 ⑨ 농·축산·임·어업 ⑩ 제조업

QC5.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떻게 되십니까?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시 ()동 ()읍·면

지금까지 설문에 성의껏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